

이 보고서는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개선방안」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정책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1448-01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개선방안 연구

2011. 01. 14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개선방안 연구

2011. 01. 14

책임연구원	방 용 원	(삼정회계법인 방용원 전무)
연 구 원	이 원 익	(삼정회계법인 이원익 이사)
연 구 원	한 정 우	(삼정회계법인 한정우 매니저)

제 출 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국토해양부의 정책연구과제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01. 14

삼정회계법인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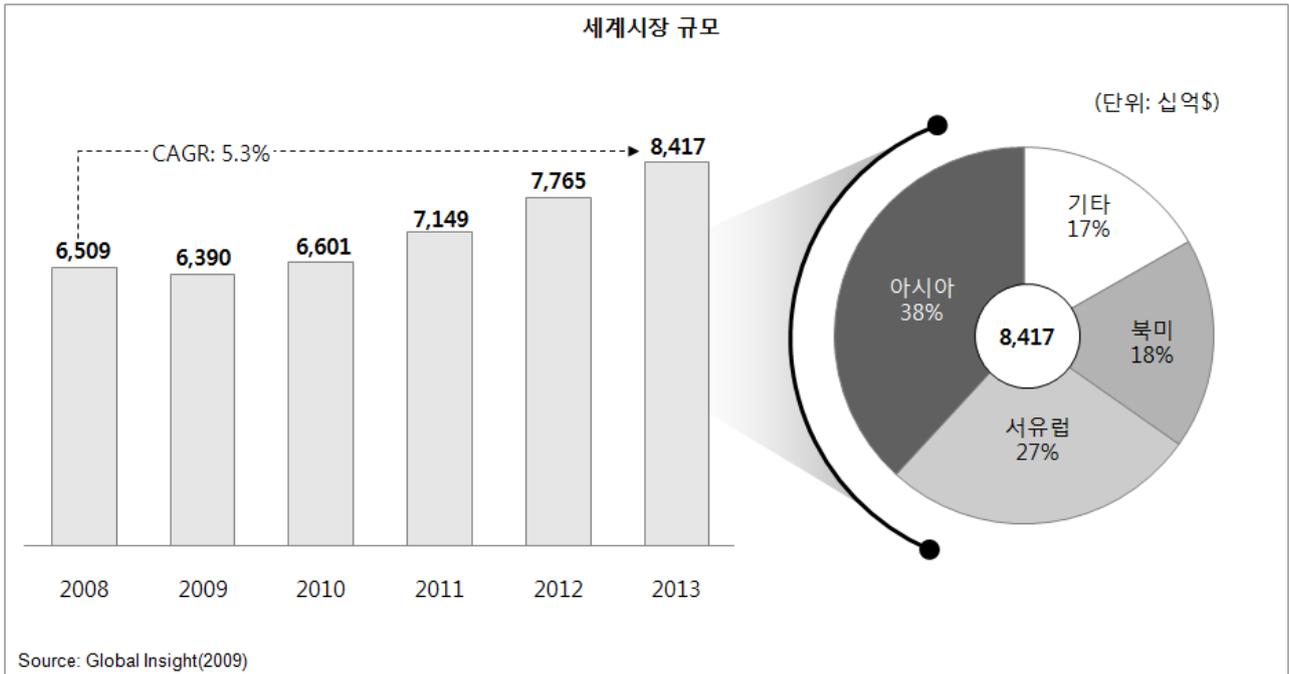
I. 사업의 개요	5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
II. 지원사업 현황	10
2.1 지원사업 절차 및 운영 현황	11
2.2 국내 유사 지원사업 분석	22
III. 사업비 정산 재검토	29
3.1 사업비 정산 규정	30
3.2 사업비 정산 재검토 결과	36
IV. 개선사항 도출	43
4.1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개선안 도출	44
V. 본 용역 보고서 이용의 유의사항	61
VI. Appendix	63

I.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1 사업배경

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2008년부터 연 평균 5.3%씩 성장하여 2013년 까지 8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아시아, 서유럽, 북미의 비중이 83%로 세계 건설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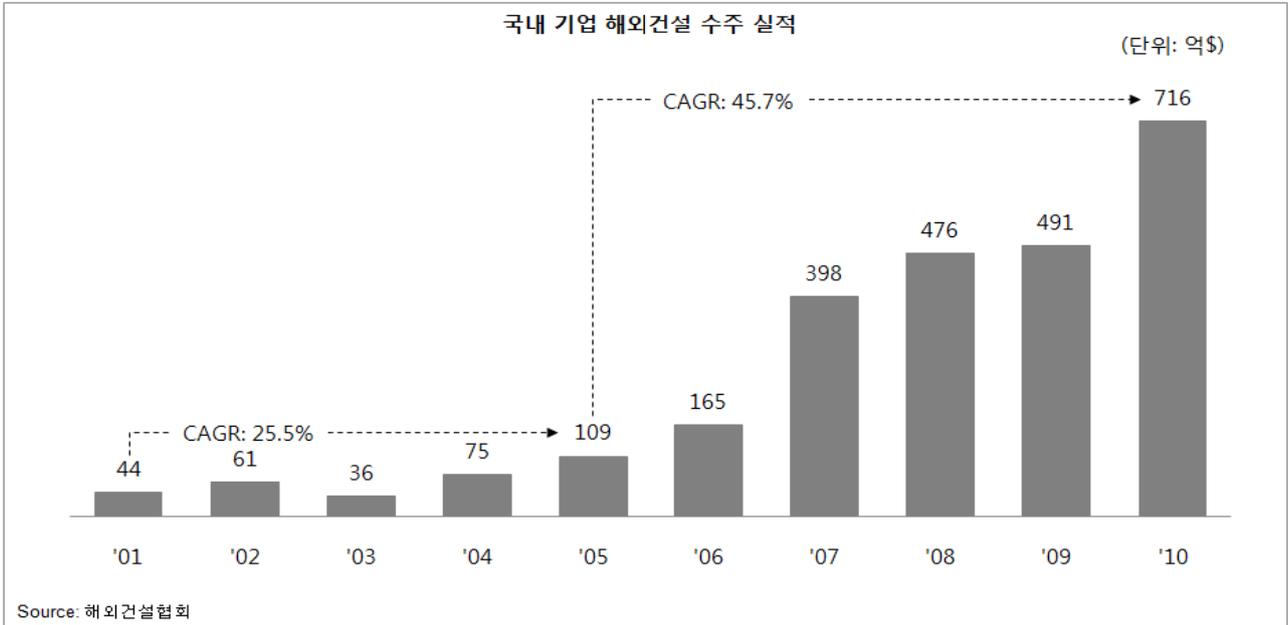


이 중 해외건설시장(외국 건설업체의 참여가 개방된 시장)은 전체 시장(2008년 기준)의 8%인 5천 2백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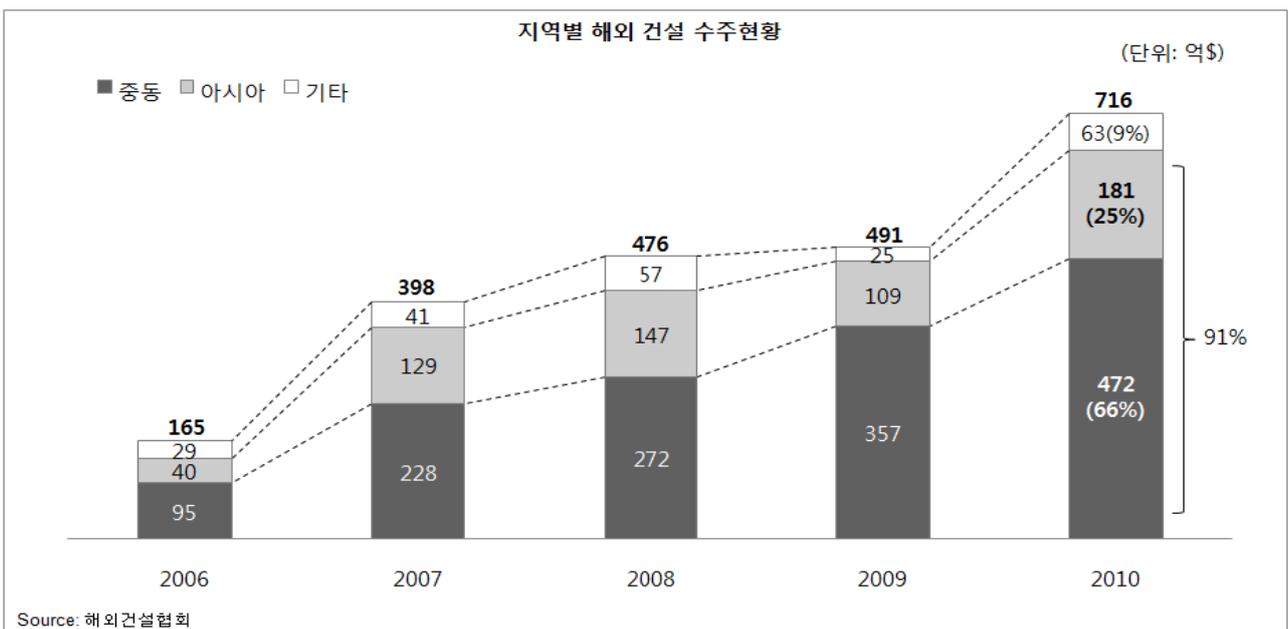
특히, 2000년 대 초부터 시작된 고유가로 인한 중동 산유국의 플랜트 시설 발주와 동남아,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 연합) 등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및 주택건설 확대 등으로 인해 해외 건설시장이 활황을 이루었다. 2009년 들어 세계 경제 침체로 해외건설시장이 위축되었지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진국들의 공조 강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발주 확대 등의 노력이 가속화 되고 있고, 2009년 하반기부터 중동을 중심으로 그간 지연된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화되면서 발주물량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이러한 발주물량의 증가와 각국의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해외건설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해외진출은 1965년에 태국의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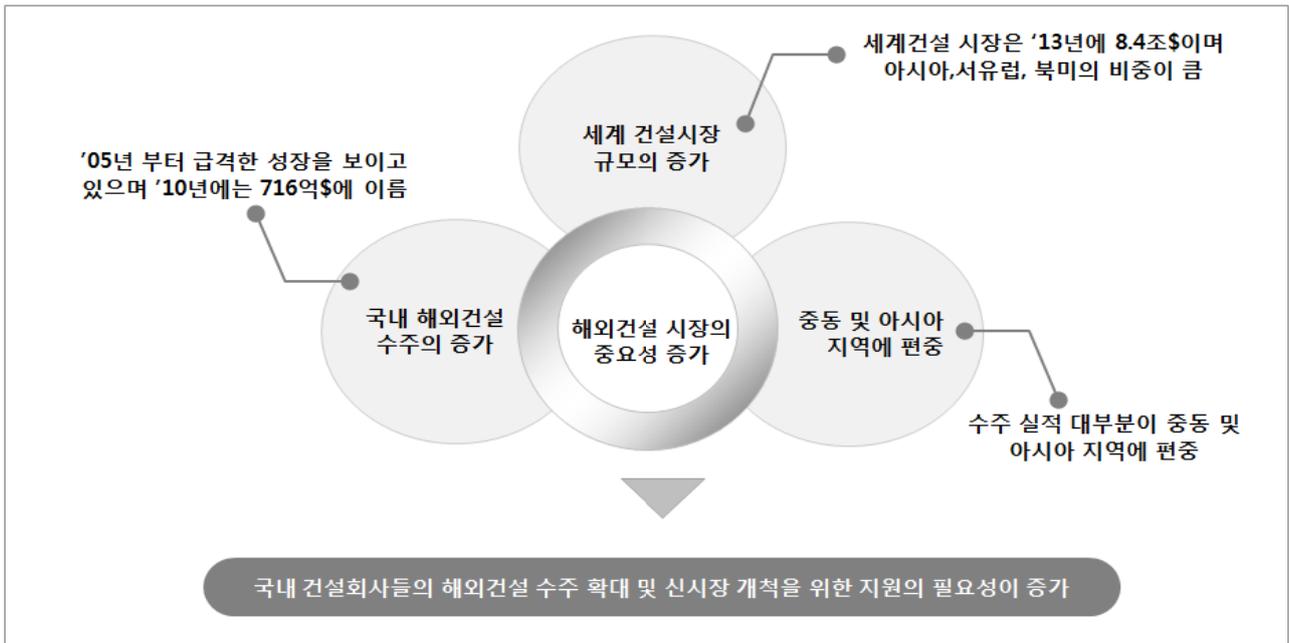
래 2010년 까지 7,780건, 4,208억 달러의 누계수주건수와 누계수주액을 달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716억 달러를 수주하여 사상 최대의 수주실적을 달성하였다.



1990년대 이전에는 중동, 1990년대 이후에는 아시아가 주 시장이었으나, 2001년 이후 중동 지역이 플랜트를 중심으로 재부상 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해외건설 수주는 고유가에 따른 중동 특수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개발붐에 따라 급증 추세를 이어 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해외건설시장 수주 실적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2010년에는 두 지역의 수주 실적이 90%를 초과 하고 있다.



이렇듯 해외건설시장의 규모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그 시장은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관계로 해외건설 수주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수주활동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정하여 2003년부터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은 국내 업체에게 미진출 국가 프로젝트 및 수주실적이 저조한 국가 프로젝트 등을 대상으로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316개 사업, 81억 원을 직접 지원하였다.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협회 지원 사업수	협회 지원 기업수 ¹⁾	협약 금액	협회 집행금액 ²⁾	집행율
2003년	23	22	387	319	83%
2004년	31	28	971	591	61%
2005년	27	27	1,180	664	56%
2006년	38	37	1,331	678	51%
2007년	61	64	2,742	1,758	64%
2008년	69	69	3,269	2,278	70%
2009년	67	71	2,921	1,801	62%
합계	316	318	12,801	8,090	63%

1) 지원 기업수는 지원 받은 건수를 1개사로 하여 동일 기업이 다수의 사업을 지원 받는 경우 중복 계산함

지원사업으로 인해 해당 기업들이 2009년 까지 수주한 실적은 3조 2천억원, 지원효과는 405배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사업의 수주활동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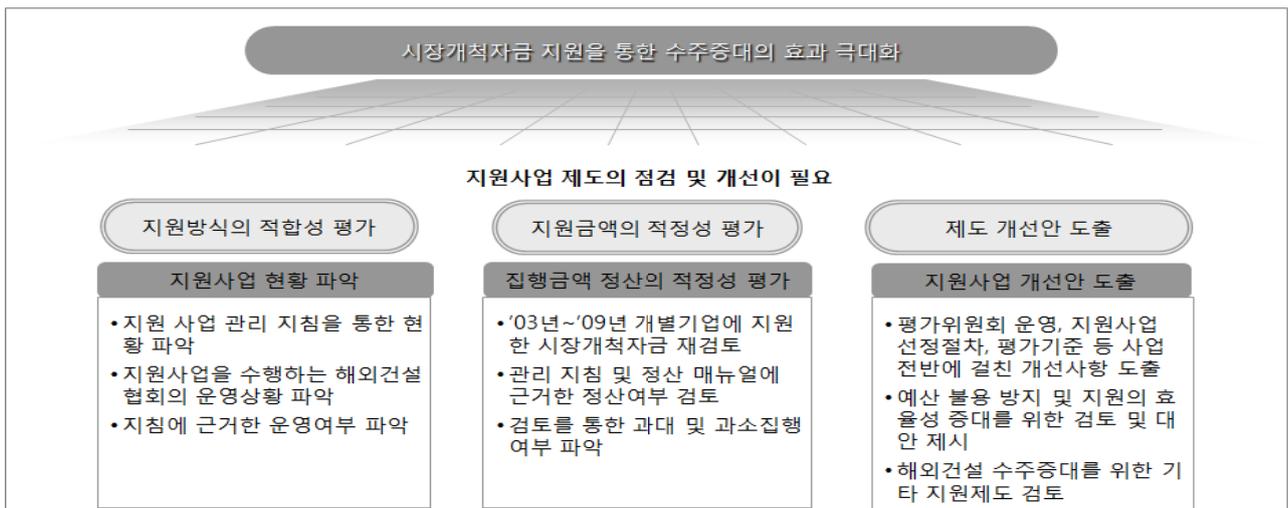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수주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협회지원사업수	수주 건수	수주 성공율	협회 집행금액	수주금액	지원효과 ³⁾
2003년	23	22	16%	319	1,202,247	3,764
2004년	31	28	23%	591	1,050,518	1,778
2005년	27	27	15%	664	245,370	369
2006년	38	37	13%	678	190,589	281
2007년	61	64	13%	1,758	441,903	251
2008년	69	69	26%	2,278	108,185	47
2009년	67	71	3%	1,801	37,008	21
합계	316	318	15%	8,090	3,275,821	405

1.1.2 연구용역의 목적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용역인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개선방안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지원사업의 시행과 수주증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지원방식 및 해외건설협회 운영의 적정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협회 간접사업비를 제외한 해당 기업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
 3) 지원효과는 수주금액(1\$=1,100원 가정)을 협회 집행금액으로 나눈 값

II. 지원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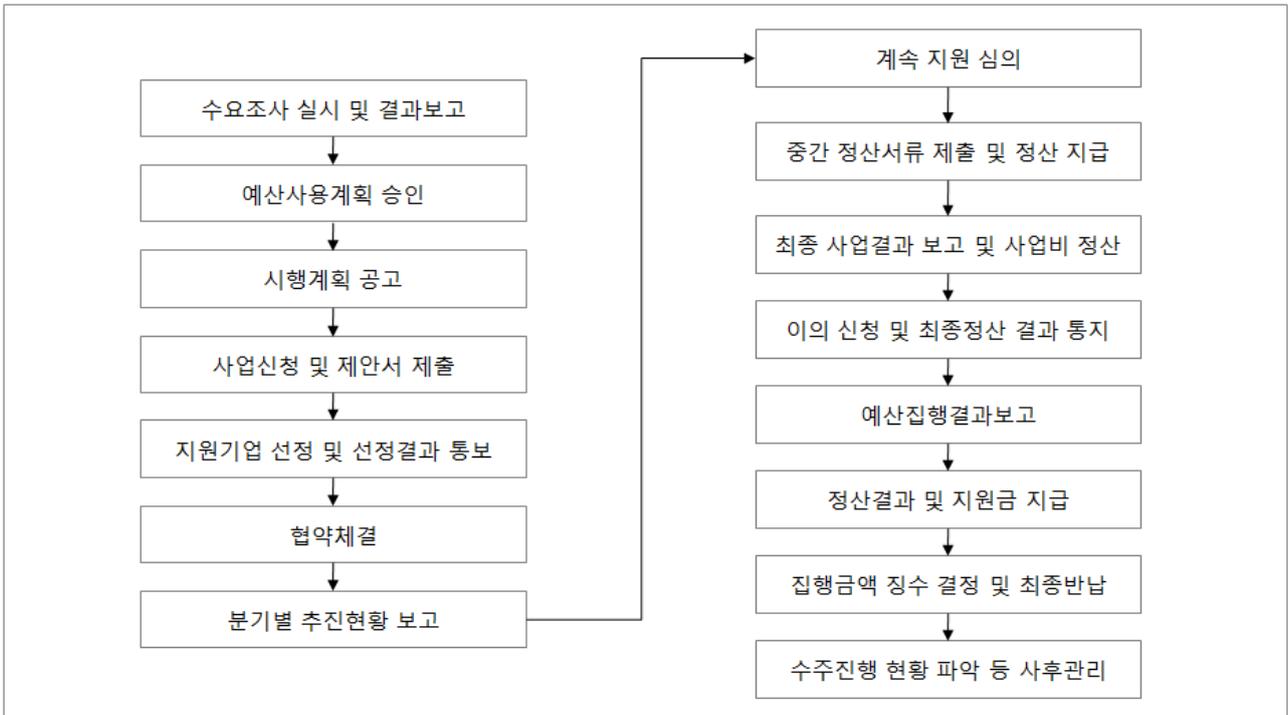
2.1 지원사업 절차 및 운영현황

2.1.1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국토해양부는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1.2 지원사업 절차 및 운영현황

관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해외건설협회(이하 ‘전담기관’)는 지침에 근거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관리지침 제 24조)

전담기관은 차기년도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매년 4월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예산사용계획 승인

전담기관은 사업연도 초에 전년도의 프로젝트 지원 실적(지원 건수, 프로젝트별 평균 지원금액 등)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며, 이를 기초로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전

담기관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을 승인한다.

3. 시행계획 공고(관리지침 제 8조)

전담기관은 전국을 보급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장개척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제반 사항을 공고한다.

(1) 지원대상 프로젝트(관리지침 제 3조)

가.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나.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

다. 미개척 다국적기업, 개발업자, 국영석유회사 등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

(2) 지원대상 사업(관리지침 제 4조)

가. 해외건설사업 수주 관련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사업

나. 기타 지원사업

- 발주처(프로젝트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함)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방한 연수 지원

- 현지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지원

-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개척 차원의 지원사업

4. 사업신청 및 제안서 제출(관리지침 제 9조)

시행계획이 공고되면 해외건설기업들은 공고 내용에 따라 관리지침에 열거된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5. 지원기업 선정 및 선정결과 통보(관리지침 제 10, 11, 12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사전 검토하여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1) 평가위원회 (관리지침 제 6조)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장으로 한다.

(2) 지원사업의 선정기준(관리지침 제 7조, 10조)

평가위원회는 아래의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며 평가 결과 종합평점의 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가. 해외건설사업 수주 관련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사업

- 프로젝트 실현여건(55): 재원조달 가능성(20), 발주국 신용도(5),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20), 프로젝트 수주가능성(10)
- 해외건설 기여도(30): 신청기업의 해외건설 기여도(10), 신청사업의 시장개척 효과(10), 공사내용의 발전성(10)
- 사업내역(15): 외화가득효과(5), 사업내역의 합리성(5), 예산의 적정성(5)

나. 기타 지원사업

- 프로젝트의 평가(25): 발주자 및 재원의 신뢰도(10), 공사내용의 발전성(10), 발주국 신용도(5)
- 수주 가능성(30): 수주활동 진행내용(10), 발주처 및 협력업체 관계(10), 예상 경쟁관계(10)
- 해외건설 기여도(35): 후속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10), 신청기업의 해외건설 기여도(15), 신청사업의 시장개척효과(10)
- 사업내역(10): 사업내역의 합리성(5), 예산의 적정성(5)

(3) 가점 및 감점 기준 및 완화 기준(관리지침 제 10조)

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평점에 가점 및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가점 기준: 중소기업 추진 사업(5점 이내), 공동 추진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신청기업과 발주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타당성 조사 사업은 우선 선정할 수 있음), 우수해외건설업자, 합작수주 시공업자, 기술개발 투자업, 대리시공자의 신청 사업
- 감점기준: 해외 진출기여도가 낮은 일정한 사업(5점 이내)
- 완화기준: 수주확대 효과가 큰 플랜트 사업의 경우 관리지침 3조의 지원대상 프로젝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 결과

2009년 및 2008년의 신청사업건수는 각각 134건, 156건이었으나 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건수는 각각 67건, 69건으로 각각 67건, 87건이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었다.

<2009 및 2008년 신청 및 선정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신청사업 건수	신청금액	선정사업 건수	지원협약 금액	협회집행 금액
〈2009년〉					
타당성사업	23	2,735	8	435	403
타당성, 초청사업	13	1,571	7	392	241
현지교섭사업	50	3,370	22	816	474
현지교섭, 초청사업	48	3,711	26	1,201	649
초청사업	-	-	4	77	34
협회사업	-	-	-	267	150
합 계	134	11,387	67	3,188	1,951
〈2008년〉					
타당성사업	27	8,331	6	503	404
타당성, 초청사업	7	763	7	561	461
현지교섭사업	101	10,067	30	1,136	694
현지교섭, 초청사업	21	2,516	25	1,054	704
초청사업	-	-	1	15	15
협회사업	-	-	-	156	134
합 계	156	21,677	69	3,425	2,412

(5) 지원기업의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한 탈락

2009년 및 2008년 탈락건수는 각각 67건, 87건이나 이 중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해 탈락한 사업은 각각 67건, 85건으로 탈락 사업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이 단순한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해 탈락한 것이다.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공고시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해 탈락한 사례를 공고 하여 사전

에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은 기업들이 지원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여 전담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2008년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한 탈락 사유>

탈락사유	2009년	2008년
해외건설업 미신고업체	4	-
지원시기(입찰시기 경과 또는 임박 등)가 경과된 사업	23	12
국내업체 하청 사업 또는 국내업체간 수주경쟁 사업	11	-
프로젝트 실체 불분명, 추진일정 장기화 가능, 지원 취지에 벗어나는 사업	5	11
발주처 확인 서류 미비(타당성 사업)	7	6
1차 신청시 - 2개이상 신청 사업	12	17
타협회 기 지원사업 등	3	-
동일국가 프로젝트 수행 신청업체 현지교섭비 “0” 으로 나온 사업	2	6
진출시 리스크 부담	-	3
자격미달	-	11
동일 사업 3년 연속 지원	-	2
신청 철회	-	3
사업계획 부실	-	1
전년도 지원금 집행실적 저조	-	2
부동산개발사업(후순위 검토결과 탈락)	-	4
시공중인 프로젝트	-	1
발주일정 불투명	-	2
동 연도 전차 모집시 지원	-	4
합	67	85

6. 협약체결 (관리지침 제 13조)

전담기관의 장은 관리지침에 따른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7. 분기별 추진현황 보고 및 계속지원 심의(관리지침 제 16, 19조)

지원기업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대비 추진상황이 포함된 중간요약보고서를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중간요약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업별로 계속 수행의 필요성 여부를 매분기(계속지원여부의 심의 특성 상 2, 3분기에 시행) 익월 말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지원기업의 중간요약보고서를 평가하여 계속 지원 심의로 인해 추진이 종료된 사업은 2009년 4건이다.

<계속지원 심의여부로 인한 추진 종료 사업>

(단위: 천원)

연도	회사명	사업 성격	프로젝트명	사유	집행 금액	심의 결과
2009년	재성종합건설	현지 교섭	카타르: 고급빌라 및 빌딩 신축	사업책임자 퇴사로 인한 사업추진 종료	3,001	사업 추진 종료
2009년	에스엔비주택		콩고: 화장지공장 건설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수주활동 중단	-	
2009년	한미파슨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컨소시엄사간 내부 업무조정으로 한미파슨스의 주요 업무가 컨소시엄 사로 이관됨에 따라 수주활동 종료	-	
2009년	대상건설		인도: 주상복합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사업추진 지연	-	

8. 중간 정산서류 제출 및 정산 지급(관리지침 제 17조)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수시로 지원기업에 중간정산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2009년까지는 중간정산을 상반기에 실시 하였으나 기업들의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2009년 12월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2010년 부터는 중간정산을 수시로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분기별로 중간 정산을 실시하여 지원기업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 최종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관리지침 제 17, 20, 21, 22조)

지원기업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결과 보고서(타당성조사사업은 타당성 조사 보고서 포함), 사용실적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 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며 평가위원회가 사업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

도록 한다. 사업결과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이 제출한 사용실적내역의 정산을 위해 전담기관은 전문회계법인에 정산업무를 위탁 하여야 하고 정산업무를 위탁받은 회계법인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정산을 수행하여 전담기관에 결과를 보고한다.

10. 이의신청 및 최종정산 결과 통지(관리지침 제 22조)

전담기관은 회계법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정산결과를 지원기업에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액을 확정하여, 필요시 차감지급 또는 환수 등의 조취를 취한다. 이의 신청을 통해 최종 정산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이의신청 및 재정산 결과>

(단위: 천원)

연도	업체	최초 정산액	추가 인정금액	최종 지급액	이의신청사유
2007년	동일기술공사	18,360	4,625	22,985	자문료 추가 인정
2008년	동호코스모	26,428	33,572	60,000	외주용역 인정
	용마 ENG	5,897	3,605	9,502	자문료 추가 인정
	우지스건설	7,256	5,000	12,256	자문료 추가 인정
	해덕건영	-	31,981	31,981	전체 재정산
	갑을건설	18,436	668	19,104	숙박일수 추가 인정
	우선전기	12,324	3,180	15,504	현지항공료 추가 인정
	태화산업개발	56,472	2,894	59,366	환율 재적용
	SK건설	63,935	31,065	95,000	외주용역 인정
	일성Eng	56,788	1,212	58,000	기술자 인건비 추가 인정
	HHI	35,966	1,034	37,000	환율 재적용
2008년 소계		283,502	114,211	397,713	
2009년	건화	43,688	(750)	42,938	인건비 일수 조정
	용마Eng	50,487	2,593	53,080	인건비 등급 상향조정
	한국종합Eng	53,372	2,628	56,000	출장 및 초청 인원 추가반영
2009년 소계		147,547	4,471	152,018	

11. 예산집행 결과보고(관리지침 제 21조)

정산결과가 확정되면 전담기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집행실적 결과를 보고한다.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집행율은 72%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원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당해 예산	9,500	400	950	950	950	1,950	2,000	2,300
이월 예산	2,356	-	206	474	585	517	493	80
합 계	11,856	400	1,156	1,424	1,535	2,467	2,493	2,380
당해예산 집행	6,737	194	476	365	433	1,458	1,919	1,892
이월예산 집행	1,783	-	163	306	379	382	493	60
합 계	8,520	194	639	671	812	1,840	2,412	1,952
집행율	72%	48%	55%	47%	53%	75%	97%	82%
반납액	989	-	43	169	208	237	-	432

연도별 집행율을 보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집행율이 연평균 51%이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집행율이 연평균 85%에 이른다. 이는 2006년 까지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사업예산의 100%를 해외건설 업체들과 지원금액으로 협약하였으나 집행율이 약 50% 대로 저조하여, 불용액의 감소를 위해 2007년부터 예산액의 100%을 초과한 금액으로 해외건설 업체들과 협약을 체결한 결과이다.

<연도별 예산 배정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협회예산규모	협약금액(간접비포함)	협약금액/예산액
2007	이월예산	517	592	114%
	당해예산	1,950	2,282	117%
합 계		2,467	2,874	116%
2008	이월예산	492	688	140%
	당해예산	2,000	2,737	137%
합 계		2,492	3,425	137%
2009	이월예산	81	114	141%
	당해예산	2,300	3,074	134%
합 계		2,381	3,188	134%

이러한 협약체결로 인해 실제 불용액은 상당부분 감소하였으나, 이는 불용방지를 위한 전담기관 운영의 결과이므로 불용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 전담기관은 해외건설업체로의 직접 지원금 외에 예산의 일정 부분을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간접비는 간접사업비와 사업관리비로 나뉘는데 간접사업비의 경우 관리지침 제4조 2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개척 차원의 지원사업’을 전담기관에서 수행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당해연도 예산의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사업관리비의 경우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예산의 3%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연도별 간접비 사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합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간접사업비 예산	411	-	-	-	39	74	98	200
간접사업비 사용	225	-	-	-	20	30	84	91
간접사업비 집행율	55%	-	-	-	51%	41%	86%	46%
사업관리비 예산	250	13	19	9	26	58	58	67
사업관리비 사용	202	6	10	7	18	52	50	59
사업관리비 집행율	81%	46%	53%	78%	69%	90%	86%	88%
간접비 총 예산	661	13	19	9	65	132	156	267
간접비 총 사용액	427	6	10	7	38	82	134	150
간접비 총 집행율	65%	46%	53%	78%	58%	62%	86%	56%

연도별 간접비 사용현황을 보면 사업관리비 집행율은 80%를 초과하나 간접사업비 집행율은 50%대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 간접비의 집행율은 평균 65%로 저조하다. 따라서 해외건설업체의 직접 지원금의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외에 전담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

12. 정산결과 및 지원금 지급(관리지침 제 17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최종적으로 정산이 완료되면 정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정산금액을 지원기업에 지급하되 기업별로 협약금액의 70%를 지급한 후 잔여예산 범위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 지급하고 있으며, 동 사항을 협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관리지침에 동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통해 상기와 같은 지원금 지급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상기 '11. 예산집행결과 보고'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원사업 예산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해외건설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협약은 100%를 초과하여 체결하였지만 실제 지원은 10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70%를 선지급하고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13. 집행금액 징수 결정 및 최종반납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집행실적 결과를 검토하여 잔여예산을 징수 결정하고, 전담기관은 징수 결정된 금액을 최종 반납한다. 2008년 까지는 당해 연도의 불용액, 즉 미집행금액은 차기연도로 이월되어 사용하고, 2년간 사용후에도 불용액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예산을 국토해양부에 최종 반납하였으나, 2009년 부터는 차기 이월 없이 불용액 발생연도에 잔여예산을 국토해양부에 최종 반납한다.

14. 수주진행 파악 등 사후관리(관리지침 제 25조)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주활동이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원사업의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2 국내 유사 지원사업 분석

현재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플랜트 산업협회의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의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수주교섭활동 지원사업’, 한국전기공사 협회의 ‘중소전기전문시공업 해외 수주활동 지원사업’ 등이 있다.

2.2.1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한국플랜트 산업협회

한국플랜트 산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의 목적은 해외 유망 플랜트 프로젝트의 개발 초기단계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의 수주 및 시장다변화를 추구하고,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자격을 ‘입찰참여자’에서 ‘개발참여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설계 컨설팅 능력 등 전반적인 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전략플랜트 프로젝트, 국내외 시장조사, 수주교섭, 홍보 등 해외플랜트 수주지원사업(간접사업)으로 진출 대상국가에 제한이 없다. 지원 대상 기업 및 지원비율은 대기업(50%), 중견기업(60%), 중소기업(70%)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총 예산규모는 연간 30억원으로 프로젝트당 지원금액의 한도는 2억원이며, 전문 컨설팅사와 공동 수행시 5점 가점을 부여하며, 감점기준은 없다.

2.2.2 해외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및 수주교섭활동 지원사업 -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및 수주교섭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은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경쟁력 강화와 수주 실적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사업은 엔지니어링 해외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해외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기타 지원사업,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있다. 기타 지원사업은 발주처(프로젝트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방한 연수 지원,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

는 시장개척 차원의 프로젝트(간접사업),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프로젝트,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프로젝트가 있으며, 진출 대상국가에 제한이 없다.

지원대상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비율은 7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지원 프로젝트당 지원금액은 타당성조사 등의 경우 5천만원 내외를 한도로 하며 수주기업 및 조사 지원의 경우에는 2천만원 내외를 한도로 한다.

해외 진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는 가점을 부여하며, 감점 기준은 없다.

2.2.3 중소기업전문시공업 해외수주활동 지원사업 - 한국전기공사 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중소기업전문시공업 해외수주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은 중소기업체의 해외공사 수주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해외시장개척활동 활성화를 통한 전문 시공업 진출역량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지원사업 대상은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발주처(프로젝트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방한 연수이며 1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누적 지원가능 횟수는 3회를 상한으로 하고 타당성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진출대상 국가에는 제한이 없다.

중소기업만을 지원대상 하여 70% 이내로 지원 하고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연간 2억원, 지원 프로젝트 당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지원 기업 당 지원금액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해외진출 기여도가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요건에 대하여 종합평점에서 일정범위내의 가점과 감점을 평가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기준은 평점의 10%를 넘을 수 없다.

2.2.4 각 협회 주요사항 비교

2.2.4.1 지원대상 국가 및 지원대상 사업

해외건설협회의 경우 미진출 국가를 중점 대상으로 하나, 타 협회에는 진출 대상 국가에 제한이 없으며, 해외건설협회와 엔지니어링 협회는 타당성 사업과 기타 현지교섭 및 초

청 등 수주활동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플랜트 산업협회는 타당성사업만, 전기공사협회는 현지 교섭 및 초청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2.4.2 지원대상 기업 및 사업비 지원비율

전기공사협회는 중소기업만을 지원하며 타 협회는 지원대상 기업규모에 제한이 없다. 해외건설협회와 플랜트 산업협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총 소요예산의 지원비율을 달리하고 있으나, 엔지니어링 협회와 전기공사협회는 지원비율을 7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70%), 대기업(40%, 2009년까지는 50%)
- 플랜트산업협회: 중소기업(70%), 중견기업(60%), 대기업 50%
- 엔지니어링 협회 및 전기공사협회: 70%이내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을 우대 및 강화하기 위해 해외건설협회와 플랜트 산업협회는 지원사업 총 예산의 70%이상이 중소기업에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2.2.4.3 평가기준

평가기준은 4개 협회 모두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프로젝트 수주가능성, 자원조달 및 수행능력, 사업내역에 대한 평가로 대부분 유사하다. 평가 기준외에 각 협회 지원사업의 목적에 따라 가점 및 감점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외건설협회는 공동추진사업, 타당성 조사사업 및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며, 플랜트 산업협회는 전문컨설팅사와의 공동사업 수행시, 엔지니어링 협회와 전기공사협회는 해외진출 기여도 항목에 가점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감점기준은 해외건설협회와 전기공사협회만 규정하고 있으며 두 협회 모두 해외 기여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 감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4.4 예산규모 및 평균 지원금액

플랜트 산업협회가 30억원으로 지원예산 규모가 가장 크며, 전기공사협회가 2억원으로 가장 작다. 플랜트 산업협회의 경우 타당성조사사업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바, 플랜트 산업의 특성상 그 파급효과가 크고 수주활동을 위한 사업에 자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전기공사협회는 타 협회와 달리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예산이 전력 기반 기금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현재 예산규모가 가장 작다. 해외건설협회와 엔지니어링 협회의 예산은 각각 23억원과 8억원이다.

평균 사업당 지원금액의 경우 플랜트 산업협회가 사업당 평균 88백만원을 지원하여 가장 크며, 해외건설협회는 44백만원, 엔지니어링 협회는 20백만원, 전기공사협회는 2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2.4.5 주요 지원 비목

(1) 인건비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표에 의해 계산되며, 해외건설협회의 경우 타당성 조사 사업의 해외 출장기간 동안의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만 인정되나, 플랜트 산업협회의 경우 국내외 활동 구분 없이 사업기간 동안 참여 인력의 참여율(월 투입요율은 70%이내)에 따른 인건비(해당 사업비의 60%이내)를 인정한다. 엔지니어링 협회 및 전기공사 협회는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자문료

해외건설협회의 경우 타당성 조사사업의 경우 15백만원, 기타사업은 5백만원의 한도 규정이 있으며, 플랜트 산업협회는 외주용역비 항목으로 10만불, 엔지니어링협회와 전기공사협회에는 자문료의 한도규정이 없다.

(3) 기타 비용의 인정

해외건설협회와 전기공사협회의 경우 관리지침상 규정되어 있는 비목해당 비용만 인정되나, 플랜트산업협회와 엔지니어링 협회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비용항목에 대해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2.4.6 과소집행에 대한 제제사항

해외건설협회와 전기공사협회는 지원대상 기업이 협약 지원금액의 70%이상을 집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차 사업연도에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플랜트 산업협회와 엔지니어링협회는 과소 집행에 대한 제제사항이 없다.

2.2.4.7 간접사업 및 사업관리비

각 협회는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업계 공동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장 개척 및 수주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건설협회와 전기공사협회의 경우 총 지원사업 예산의 20%와 10% 이내로 간접사업 예산을

제한하고 있으나 타 협회는 제한이 없다.

사업관리비는 각 협회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지원사업 예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다.

< 각 협회 지원사업 주요 항목 비교 >

구분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전기공사협회
주관기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진출국가	미진출 국가 중심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지원대상 사업	F/S 사업 현지수주 교섭 초청사업	F/S 사업	F/S 사업 현지수주 교섭 초청사업	현지수주 교섭 초청사업
지원비율	중소기업	70%	70%	70%
	중견기업	-	60%	-
	대기업	40%	50%	70%
	공동사업	10% 가산	10% 가산 (중소기업 제외)	가산 규정 없음
예산배정비율	중소기업 70% 이상 원칙	중소기업 70% 이상 원칙	N/A	100%
가점기준	공동사업 F/S 사업 중소기업 우수해외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와의 공동사업 수행	해외 진출 기여도 우수	해외 진출 기여도 우수
감점기준	해외진출기여 저조	없음	없음	해외진출기여 저조
예산규모 (2009년 기준)	23억	30억	8억	2억
평균 지원금액	43,603천원/건 (2009년)	88,372천원/건 (2002~2008년)	20,000천원/건 (2009년)	25,000천원/건 (2009년)
인건비	해외인건비만 인정	국내외 구분 없음	인건비 인정안함.	인건비 인정안함.
자문료 한도	F/S: 15백만원 기타: 5백만원	비목: 현지 전문가 한도 없음	한도 없음	한도 없음
기타 비용	비목해당 항목만 인정	포괄적 인정	포괄적 인정	비목해당 항목만 인정
과소집행시	70%미만 집행시 차	N/A	N/A	70%미만 집행 시 차

구분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전기공사협회
제재사항	사업연도 신청불가			사업연도 신청불가
간접사업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개척 차원의 지원사업 (민관 합동 시장조사단 파견 또는 업계 공동 차원의 발주처 인사초청 행사)	국내외 시장조사, 수주교섭, 홍보 등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전문가 지원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엔지니어링 해외 수주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수주교섭 및 관련 지원, 홍보 등
간접사업비 한도	예산의 20% 이내	N/A	N/A	예산의 10% 이내
사업관리비 한도	예산의 3% 이내	예산의 5% 이내	예산의 2% 이내	예산의 5% 이내

2.2.4 각 협회 공동 협력 방안

각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각 협회 및 사업목적에 따른 차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기본 사업목적은 해외건설시장의 수주 확대이다. 따라서 사업 목적의 극대화를 위해 각 협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2.2.4.1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정보 공유

현재 국내 업체들의 해외 수주활동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외건설시장 정보부족이다. 따라서 해외건설시장에 대해 각 협회들이 보유하고 있는 DATA를 공유하고 체계화 하여 각 기업들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각 협회뿐만 아니라 KOTRA, 한국수출입 은행과도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또, 각 협회의 수주활동 모범사례 발굴과 발표를 통해 선도업체의 노하우를 각 기업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2.2.4.2 해외 시장 조사단의 공동 파견

현재 해외 건설협회의 ‘해외시장건설 개척 지원사업’ 중 간접사업으로 해외 조사단 파견이 있으며, 각 협회에 이와 유사한 간접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업계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는 활동이나 협회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각 협회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도 있겠으나, 각

협회의 지원사업의 기본 목적이 해외건설시장의 수주 확대이므로 해외 조사단 파견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각 협회가 공동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각 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2.4.3 공동 협의체의 구성

상기에서 설명한 정보공유 및 해외 시장 조사단의 공동 파견과 같은 활동을 위해서는 각 협회의 공동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각 협회의 지원기업 현황, 해외건설정보 공유, 해외 시장 조사단의 공동 파견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III. 사업비정산 재검토

3.1 사업비정산 규정

3.1.1 관련 규정

지원기업은 사업종료 후 최종 사업비 사용실적내역과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종료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한다. 사업비에 대한 정산은 전문 회계법인에서 담당하며 세부 정산은 관리지침 및 정산 매뉴얼, 협약서를 기준으로 사업비 사용실적 내역을 검토하여 집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한다.

정산 매뉴얼은 정산관련 세부 사항에 대한 기준으로, 협회 담당자가 관리지침 및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있다.⁴⁾

3.1.2 정산 규정 요약

해외건설협회가 지원하는 사업은 타당성 조사 사업(F/S), 초청 사업, 현지교섭 등의 기타 지원사업으로 구분되며 각 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비목에 차이가 있다.

<정산 규정 요약>

구 분		내 용		비고
환율적용		USD	출장전일 외환은행 최종고시 현찰 살 때(초청사업은 국내 입국 당일 외환은행 최종고시 현찰 살 때) 환율	
		현지화	비용발생일 외환은행 최종(비)고시 환율 단, 비용발생일이 명확치 않을 경우 출장 전일 외환은행 최종(비)고시환율	
인건비	직접 인건비	직접인건비	타당성 조사사업(해외 인건비), 발주처 인사초청 행사(행사보조원)	엔지니어링 업체에 한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적용
직접 경비	국외 여비	국제 항공료	실비 정산	
		체재비	공무원여비규정 준수, 초과 숙박비는 실비정산	‘07년부터 출장일수 제한(F/S 300MD, 기타 200MD)

4) 정산매뉴얼은 '07년 최초 작성하여 정산 시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09년부터 협회 홈페이지 (<http://www.icak.or.kr/>)에 게시하여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비 고
경비	현지항공료	실비 정산	
	현지교통비, 차량임차료	실비 정산, 교통비의 경우 차량 임대기간과 중복 불가	
	현지 회의 제경비	실비 정산(기준 1인당 6만원), 국내회의의 경우 인사초청만 인정	07년 1인당 한도 6만원, 08년 이후 실비 금액 인정
	자문료	금융, 세제, 법률, 회계, 기술 자문 비용 한도 : F/S 15백만, 기타 5백만	한도 규정 07년부터 적용
	통·번역비	실비정산	09년부터 자문료와 구분
	자료수집비, 인쇄비, 통신비	실비 정산, 현지 로밍 등	
	정산 수수료	정산 회계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전액 지원

※ 비목별 제한 규정

- 타당성조사 인건비 제한규정: 엔지니어링 업체에 한해 현지작업분만을 인정
- 현지 교통비와 현지 차량임차료 중복불가
- 현지 출장일수 제한규정
 - 타당성조사활동: 300MD 이하(J/V경우, 통합 300MD)
 - 현지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200MD 이하(J/V경우, 통합 200MD)
- 동일지역 장기 체류시 감액기준(일비 및 숙박비 감액)
 - 도착한 다음날부터 기산 15일 초과시 10분의 1,
30일 초과시 10분의 2,
60일 초과시 10분의 3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자문료 제한규정
 - 타당성조사활동(타당성&초청사업 포함): 1,500만원
 - 현지수주교섭 및 조사활동(초청사업 포함): 500만원
 - 업체별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JV의 경우 업체별로 한도를 적용한다.
 - 통·번역비의 경우 출장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므로 '09년부터 자문료와 별도로 실비 전액을 인정하고 있다.

- 회의제경비, 식음료비 제한규정
 - 소요예산 작성기준은 참석인당 최대 6만원으로 작성
 - 정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실비 정산

※ 2009년도 발표 노임단가 기준

구분	단가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기술사	296,530	·기술사	-
특급 기술자	234,433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189,895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구분	단가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중급 기술자	162,228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120,491	·기사자격을 가진 자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석사학위를 가진 자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공무원 여비규정(2009 기획예산처 고시 참조)

- 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
 - 민간업체 사장급 이상 : 제1호
예) 회장, 사장, 대표이사
 - 임원급 이상 : 제2호
예) 전무, 상무, 이사
 - 기타의 자 : 제3호
예) 부장, 사원, 고문, 자문 등

공무원 여비규정 기준단가(2009년 기준)

(단위: 달러)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료
제1호	가	40	205	133	준1등석 실비
	나	40	149	99	
	다	40	118	72	
	라	40	100	61	
제2호	가	35	166	107	준1등석 실비
	나	35	120	78	
	다	35	92	58	
	라	35	79	49	
제3호	가	30	145	81	2등 정액
	나	30	95	59	
	다	30	70	44	
	라	30	62	37	

※ 단, 기내숙박은 숙박일수에서 제외(여권 출입국 직인 기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 나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다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 라등급

-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가항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가항의 국가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링시찰 또는 방한연수 지원사업의 경우 국가(도시) 등급은 “ 가 “ 등급을 적용한다.

3.2 사업비 정산 재검토 결과

3.2.1 사업비 정산 재검토 목적

사업비 정산의 재검토의 목적은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각 지원기업에 집행된 지원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를 각 연도의 관리지침 및 정산 매뉴얼 등의 정산 규정에 따라 재검토 하여 사업비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정산 규정의 미비점을 파악함으로써 정산 규정을 보완하고 정산 규정이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2.2 재검토 대상 및 재검토 방법

재검토 대상은 직접사업비와 간접비로 구분된다. 직접사업비는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316개 사업에 지원된 81억원이며, 간접비는 해외건설협회에서 2006년부터 2009년 까지 지출한 간접사업비 2억원과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지출한 사업관리비 2억원 총 지원금액은 85억원이다.

2007년 이전은 정산 매뉴얼이 없으므로 관리지침 및 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정산내용을 검토 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작성한 정산 매뉴얼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재검토시 해외건설협회 및 정산기관의 정산결과와 지원기업의 세부 관련 증빙을 정산규정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본 재검토는 증빙의 진위 여부나 부정 여부를 검토 한 것은 아니며, 정산결과를 바탕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업비 정산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정산규정에 위배 되는 항목을 검토하는 것으로 어떠한 의견이나 확신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

3.2.2 검토 결과 요약(지원 비율 적용 후 협회 집행금액 오류)

3.2.2.1 직접사업비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건설협회에서 집행한 금액은 8,090백만원이나, 집행금액을 재검토한 결과 정산 규정에 의해 집행되어야 할 금액은 8,074백만원으로 16백만원이 과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사업비 정산 재검토 결과 요약 - 지원사업〉

(단위 : 천원)

연도	협회지원 사업수	협회집행금액 (a)	과대집행 (b)	재검토 금액 (c=a-b)	오류율 (b/c)
2003년	23	319,379	-	319,379	0.00%
2004년	31	590,818	-	590,818	0.00%
2005년	27	664,420	-	664,420	0.00%
2006년	38	678,215	194	678,021	0.03%
2007년	61	1,757,768	7,675	1,750,093	0.44%
2008년	69	2,278,357	620	2,277,737	0.03%
2009년	67	1,801,205	7,502	1,793,703	0.42%
소계	316	8,090,162	15,991	8,074,171	0.20%

3.2.2.2 간접비

(1) 간접사업비

간접사업비는 관리지침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개척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수행되고 있으며, 사업관리비는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관리지침에 따라 총 사업예산의 3%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비 정산 재검토 결과 요약 - 간접비〉

(단위 : 천원)

연도	간접사업비		사업관리비	오류금액	재검토금액
	사업수	집행금액			
2003년	-	-	6,276	-	6,276
2004년	-	-	10,270	-	10,270
2005년	-	-	7,160	-	7,160
2006년	2	20,000	18,380	-	38,380
2007년	5	30,218	52,095	-	82,313
2008년	2	83,622	50,322	-	133,944
2009년	8	91,258	58,778	-	150,036
소계	17	225,098	203,281	-	428,379

간접사업은 민관합동 시장 조사단 파견 또는 업계 공동 차원의 발주처 인사 초청행사로 구분되며 연도별 간접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간접 사업비 연도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금액	
2006년	알제리 조사단 파견	12,906	20,000
	아제르바이잔 조사단 파견	7,094	
2007년	이라크발주처 인사초청	19,995	30,218
	베트남 민관합동 경제협력 실무조사단 파견	710	
	러시아 주택개발사업 시장조사단 파견	2,696	
	리비아 시장조사단	1,030	
	가봉 시장조사단	5,788	
2008년	카자흐 시장조사 건설협력사절단	6,416	83,622
	Globla Project Plaza 2008	77,206	
2009년	우즈베키스탄 주요 발주처 인사초청	10,631	91,258
	라오스 태국 민관합동 시장조사단 파견	1,643	
	인도 싱가포르 민관합동 시장조사단 파견	871	
	알제리 민관합동 시장조사단	3,114	
	아프리카 민관합동 시장조사단	10,334	
	중동 민관합동 시장조사단	5,330	
	우즈벡 키르기즈 민관합동 시장조사단	8,460	
	Global Project Plaza 2009	49,876	
총계		225,098	

사업관리비는 지원사업 담당 인력의 인건비, 평가위원회 비용, 홍보비, 기타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접 배부액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복사용품, 사무용품, 통신비 등은 연초 사업 예산 편성에 따른 금액을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실제 발생한 경비를 집행하고 있다.

〈사업관리비 연도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배부방법	금액	
2003년	회의자문비	실제경비	6,241	6,276
	전화 및 우편료	실제경비	35	
2004년	회의경비	실제경비	10,270	10,270
2005년	전문가 자문료	실제경비	1,200	7,160
	회의경비	실제경비	5,845	
	전화 및 우편료	실제경비	70	
	수수료	실제경비	45	
2006년	전문가자문료	실제경비	4,400	18,380
	연구심의회	실제경비	1,009	
	회의경비	실제경비	1,044	
	사무관리비및통신비	실제경비	361	
	복사용품비	실제경비	3,690	
	수수료	실제경비	59	
	광고료	실제경비	7,385	
	회의경비	실제경비	411	
	수수료	실제경비	25	
2007년	인건비	예산배부	30,000	52,095
	전문가자문회의	실제경비	6,400	
	회의운영비	실제경비	1,966	
	홍보비	실제경비	7,218	
	복사용품비	실제경비	3,883	
	전산사업비	실제경비	938	
	사무용품비	실제경비	692	
	통신비	예산배부	1,000	
2008년	인건비	예산배부	30,000	50,322
	회의운영비	실제경비	6,741	
	홍보비	실제경비	8,221	
	복사용품비	예산배부	3,360	
	사무용품비	예산배부	1,000	

구분	내역	배부방법	금액	
	통신비	예산배부	1,000	
2009년	평가위원회 비용	실제경비	9,001	58,778
	담당직원 인건비	예산배부	35,000	
	시행공고비	실제경비	9,418	
	복사기 입차료	예산배부	3,360	
	업무용사무용품 구입	예산배부	1,000	
	전화 및 통신요금	예산배부	1,000	
총계			203,281	

3.2.3 세부 오류 유형

과대 집행된 오류 정산 내역은 자문료 한도 초과 미 적용, 동일 영수증 중복 청구, 체재 일수 오류, 비목외 비용, 증빙 미비, 환율적용 오류, 영수증 금액 오류, 장기체류 미감액 오류로 나타나고 있다.

<오류 유형 요약>

유형	내용
체제비 단가 오류	임직원 등급 및 출장지 급지 기준을 상향 적용하여 항공료 및 체제비 등 정산
자문료 한도 초과	자문료 한도 기준 초과
중복정산	동일한 영수증을 중복하여 정산한 경우 또는 JV사업에 참여한 회사가 동일한 영수증을 각각 청구한 경우
체재일수 오류	여권적인 기준으로 출장일수를 계산하지 않았거나, 출장일수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목 외 비용	원칙적으로 관리지침 [별표4]에 명시된 비용 외의 경비는 인정 불가
영수증 금액 오류	영수증 상 비용과 정산비용과의 차이 발생
증빙 미비	필요 증빙 미비
환율적용 오류	체제비 계산시 출장전일 환율과 다른 환율 적용
장기체류 감액 미적용	1회 출장시 15일 이상 장기 체류시 감액 규정 미적용
회의비 지출 오류 ⁵⁾	회의록 상 지출일 전일 지출경비 회의비로 인정

이러한 오류 유형 외에 지원기업들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정산 할 때 부가세액을 포함하여 정산하였다.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 되지 않은 항목이므로 사업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관리 지침 및 정산 매뉴얼에 동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2.4 연도별 오류 유형 금액

연도별 오류 유형금액을 살펴보면 급지 상향조정으로 인한 체재비 단가 오류, 자문료 한도 초과로 인한 과대 집행금액과 동일 영수증 중복 정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오류 유형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오류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합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체재비 단가 오류	6,496	-	-	-	194	800	620	4,882
자문료 한도 초과	4,889	-	-	-	-	4,889	-	-
중복정산	2,987	-	-	-	-	1,329	-	1,658
체재일수 오류	910	-	-	-	-	575	-	335
비목 외 비용	357	-	-	-	-	-	-	357
영수증 금액 오류	114	-	-	-	-	-	-	114
증빙 미비	97	-	-	-	-	-	-	97
환율적용 오류	80	-	-	-	-	21	-	59
장기채류 감액 미적용	61	-	-	-	-	61	-	-
합계	15,991	-	-	-	194	7,675	620	7,502

3.2.5 비용항목별 오류율(지원비율 적용전 지원기업 지출 사업비)

사업비목별 오류금액을 보면 인건비정산에서는 오류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항공료, 체재비, 경비에서의 오류가 나타났으나 전체 정산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미만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항공료는 동일 영수증 중복정산, 체재비는 급지 및 직급적용에 대한 오류, 경비의 경우 자문료 한도초과 미적용이 주 원인이다. 따라서 추후 정산시 동 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정산 규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집행율이 100%을 초과하여 과대 집행 금액에는 영향이 없음

<비용항목별 오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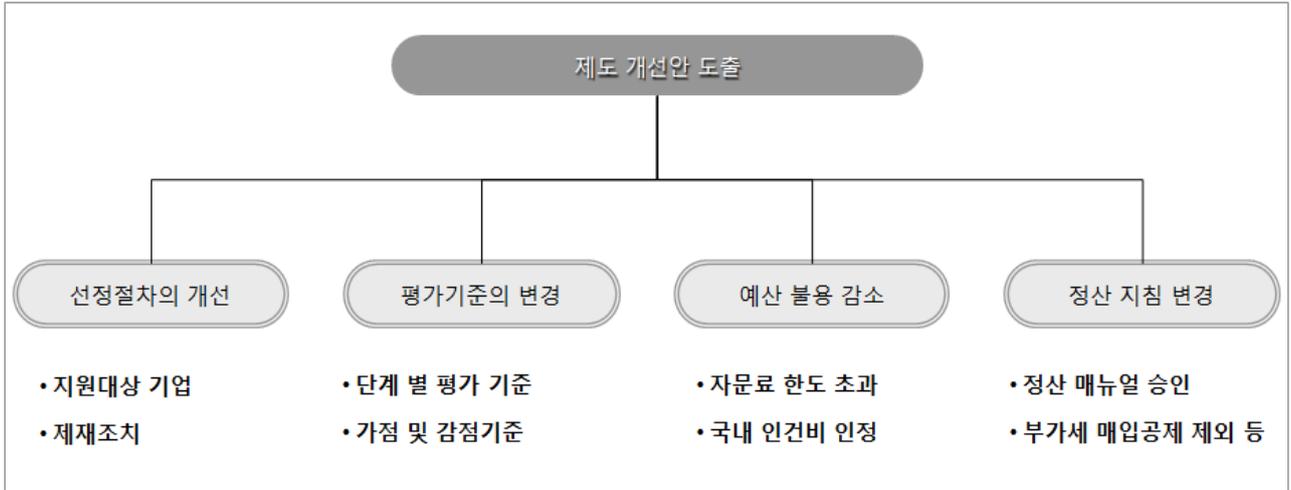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합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재정산 금액								
인건비	2,552,820	278,013	156,551	411,508	106,785	359,998	663,300	576,665
항공료	4,717,178	205,102	591,991	349,626	429,403	1,091,883	1,229,935	819,238
체재비	5,209,628	239,138	670,484	456,888	601,093	954,713	1,115,095	1,172,217
경비	2,285,530	5,000	95,657	162,120	210,651	485,731	828,189	498,182
합계	14,765,156	727,253	1,514,683	1,380,142	1,347,932	2,892,325	3,836,519	3,066,302
과대 정산 금액								
인건비	-	-	-	-	-	-	-	-
항공료	2,885	-	-	-	-	2,657	-	228
체재비	11,223	-	-	-	394	2,331	926	7,572
경비	11,576	-	-	-	-	8,217	-	3,359
합계	25,684	-	-	-	394	13,205	926	11,159
오류율								
인건비	0.00%	-	-	-	-	-	-	-
항공료	0.06%	-	-	-	-	0.24%	-	0.03%
체재비	0.22%	-	-	-	0.07%	0.24%	0.08%	0.65%
경비	0.51%	-	-	-	-	1.69%	-	0.67%
합계	0.17%	0.00%	0.00%	0.00%	0.03%	0.46%	0.02%	0.36%

IV. 개선사항 도출

4.1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개선안 도출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절차 및 운영현황, 유사지원사업 분석, 집행 사업비의 정산 재검토와 그 결과를 통해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안은 지원대상 기업 선정절차, 업체 선정 평가기준, 예산 불용 방지, 정산 지침에 대한 사항을 중점으로 도출하였다.



4.1.1 지원대상 기업 선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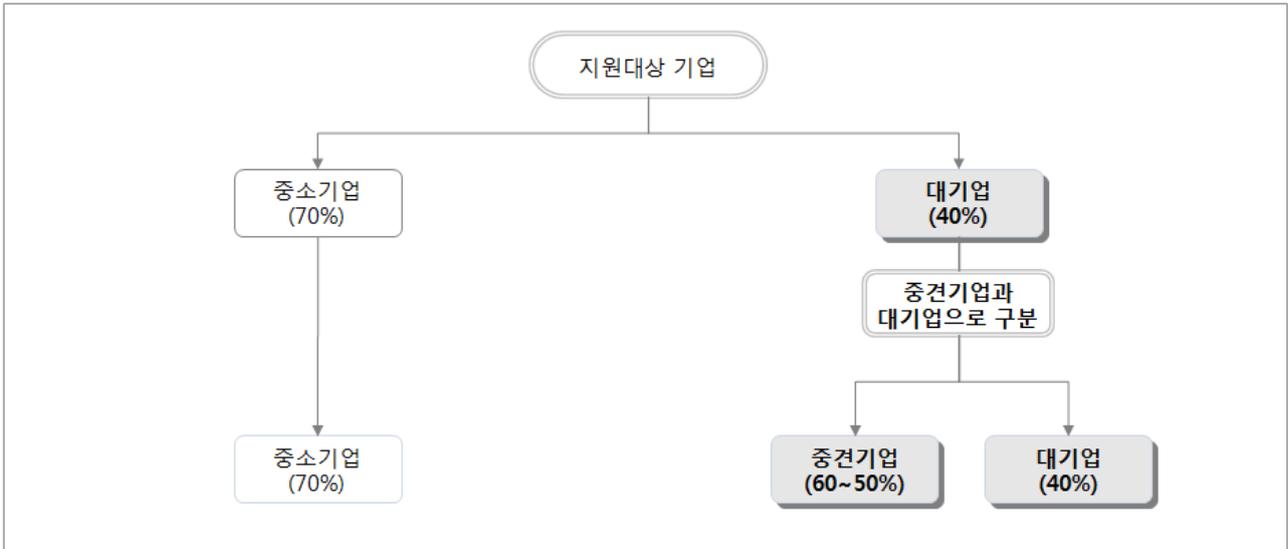
4.1.1.1 지원대상 기업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기업(이하 ‘지원기업’)은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원비율도 각각 70%와 40%(2009년까지는 5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중견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법령도 준비 중에 있음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 중 대기업을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서 고용안정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의미하여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인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중견기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2010년 9월 16일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관련 소관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어 현재 체계 자구 심사 중에 있다.

산업발전법 제 10조의 2(신설) - 중견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 할 것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플랜트 산업협회의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에서도 지원기업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지원비율을 60%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2009년 까지 지원사업 중에서 대기업으로 구분된 회사들 중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구분 할 수 있는 회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중견기업의 지원비율을 60%(현행 지원비율 50%)로 가정할 경우 협회 집행금액과 예산 집행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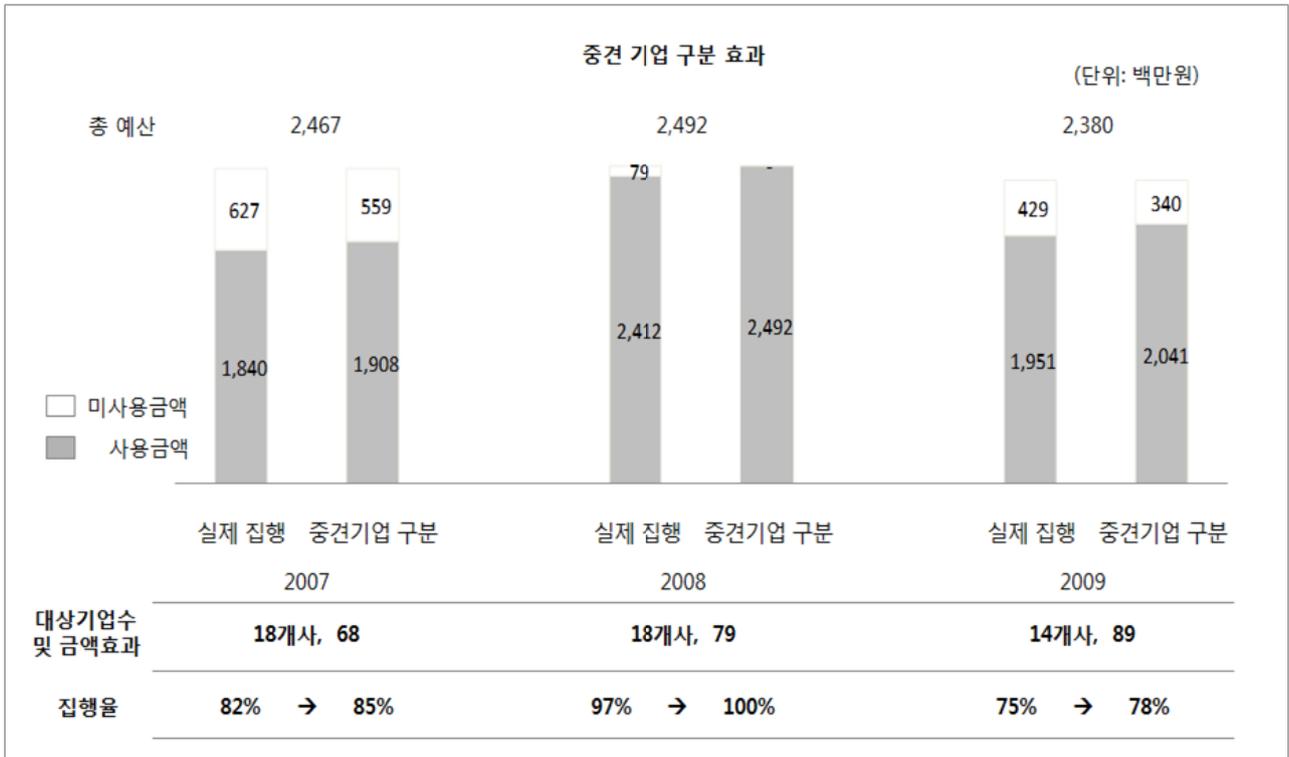
<중견기업 구분 효과>

(단위: 원)

2007년		2008년		2009년	
회사명	금액효과	회사명	금액효과	회사명	금액효과
청석엔지니어링	3,986,202	청석엔지니어링	5,934,050	삼부기술	2,750,709
평화	2,845,776	평화	5,126,957	도화종합기술공사	14,568,973
삼보기술단	13,964,106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6,335,838	동호	3,558,360
다산	4,061,744	동원시스템즈건설	3,899,791	삼보기술단	12,508,744
남원건설Eng	3,040,490	수성Eng	2,044,171	청석엔지니어링	2,515,514

2007년		2008년		2009년	
회사명	금액효과	회사명	금액효과	회사명	금액효과
한솔이엠이	3,694,000	건화	4,824,641	평화엔지니어링	4,966,518
경남기업	2,674,000	동호	1,865,749	이수건설	-
쌍용건설	873,433	HHI	6,228,299	유신코퍼레이션	10,782,891
건화	2,564,478	동호	8,118,293	제일Eng	13,189,801
동일기술	3,791,928	벽산ENG	-	쌍용건설	2,245,405
대원	3,277,567	유신CORP	1,535,170	한미파슨스	-
벽산Eng	3,409,470	제일ENG	5,061,660	동원시스템즈	6,464,485
삼환기업	-	한일건설	1,902,075	평화Eng	10,307,105
쌍용건설	3,334,705	남원건설ENG	5,000,000	한일건설	5,603,574
제일Eng	1,712,600	삼부토건	2,316,063	-	-
한일건설	8,856,444	삼안	4,859,627	-	-
삼부토건	3,893,590	이수건설	5,444,977	-	-
수자원기술	2,839,186	평화ENG	8,925,064	-	-
18개사	67,946,285	18개사	79,422,426	14개사	89,462,079

중견기업 구분으로 인해 집행율은 평균 약 3% 증가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1.1.2 제재조치

지원기업은 관리지침 제 16조에 따라 지원기업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지원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외건설협회는 지원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원기업의 의무(관리지침 제 16조)

1. 정부지원금 이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 부담
2. 사업책임자의 지정, 사업 수행의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
3.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

지원기업이 이러한 사항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지침에 제재 규정을 두어 지원기업의 의무 이행의 해태를 방지 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의 제재 사항(관리지침 제 19조 3항, 제 23조)

(1) 계속수행 불요 시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계속심의에 의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요하다고 결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해약 조치하고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2) 사업포기시

사업포기시 제재사항: 지원기업이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개척사업을 신청 할 수 없다.

(3) 집행실적 저조시

지원기업은 사업비 정산 결과 협약 지원금액의 70%이상을 집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시장개척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미집행의 귀책사유가 당해 기업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원기업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전담기관인 해외건설협회가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나 지원 대상 사업별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타당성 사업의 경우 발주처의 요청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현지수주 교섭 및 초정 사업과 같은 기타사업은 사업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 발주 지연 및 철회, 교섭 지연 등 사업의 성격이 타당성 사업보다 불확실하여 사업진행이 연기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사업비의 집행율도 저조하다.

<사업별 집행율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구분 ⁶⁾	협약 지원금액	협회 집행금액	집행율
2003년	타당성 사업	170,000	151,473	89%
	기타 사업	217,020	167,906	77%
2004년	타당성 사업	50,000	50,000	100%
	기타 사업	921,000	540,818	59%
2005년	타당성 사업	372,000	265,540	71%
	기타 사업	808,000	398,880	49%
2006년	타당성 사업	90,000	85,463	95%
	기타 사업	1,241,000	592,752	48%
2007년	타당성 사업	918,000	663,075	72%
	기타 사업	1,824,000	1,094,693	60%
2008년	타당성 사업	1,064,000	865,173	81%
	기타 사업	2,205,000	1,413,184	64%
2009년	타당성 사업	827,433	643,877	78%
	기타 사업	2,094,000	1,157,328	55%
합계	타당성 사업	3,491,433	2,724,601	78%
	기타 사업	9,310,020	5,365,561	58%

타당성 사업의 평균 집행율은 70%을 상회하고 있으나 현지수주 교섭 및 초청 사업인 기타사업의 경우 평균 집행율이 70%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집행금액이 ‘0’ 인 사업의 대부분도 기타사업으로 2007년 3건, 2008년 4건 모두 기타사업이며 2009년 8건 중 7건이 기타 사업이다. 집행금액이 ‘0’ 인 사업을 제외하고, 집행율을 산정하여도 기타사업의 평균 집행율은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제재 조치 규정을 타당성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타당성 사업의 경우 현재 규정을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나, 기타 사업의 경우 사업 집행율 한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계속수행 불요시와 사업추진 포기시에는 귀책사유의 귀속에 따른 예외조항의 신설도 필요하다.

6) 타당성 사업이 초청사업과 같이 이루어질 경우 타당성 사업에 초청사업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사업은 현지 수주 교섭 및 초청사업임.

〈사업별 제재 유형 변경〉

제재 유형	타당성 사업	기타 사업
계속 수행 불요시	현재 기준 적용	귀책사유에 따른 예외조항 필요
사업 포기 시	현재 기준 적용	귀책사유에 따른 예외조항 필요
집행실적 저조시	현재 기준 적용	70% --> 50%로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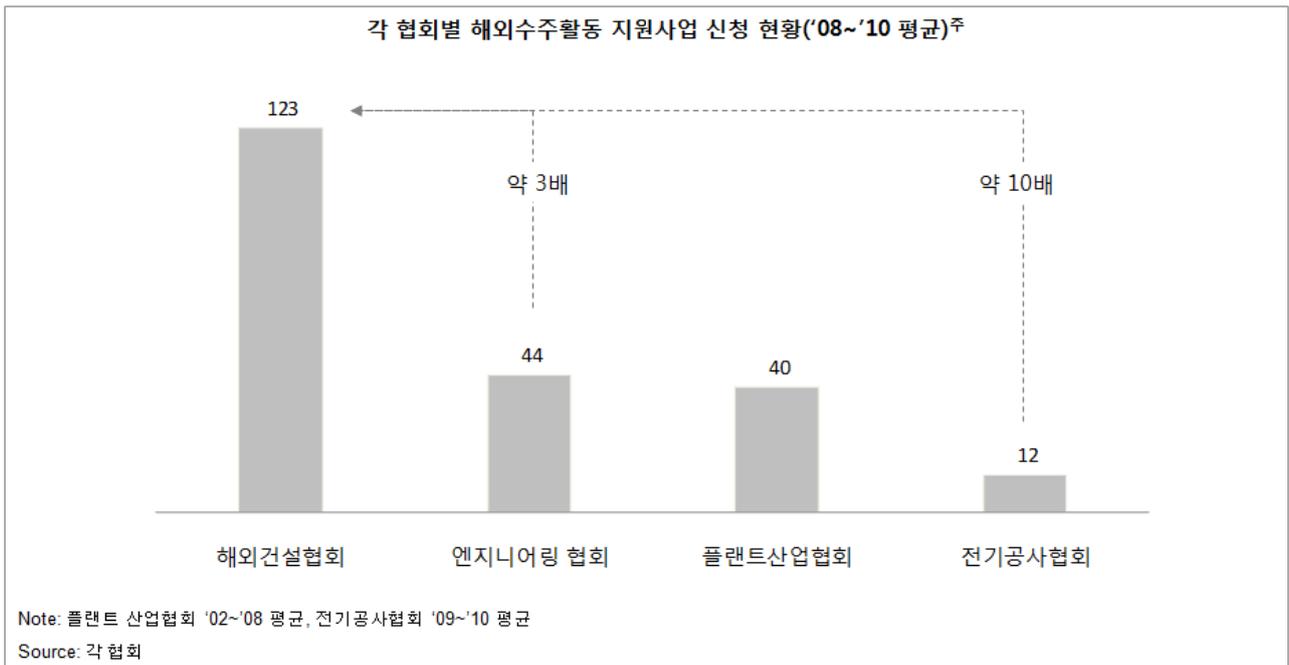
계속 수행 불요시나 사업포기시의 제재 규정은 적용하되 기타사업은 그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원기업에 있지 않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포기의 이유가 발주처의 발주 지연이나 무리한 요구와 같이 발주처의 원인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원기업 사업담당자의 퇴직과 같이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을 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재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 기타사업의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의 상당 부분은 발주처의 발주 지연으로 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원기업의 해외 출장 등의 방문 횟수가 계획보다 감소하여, 지출비용이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집행실적 70%의 한도를 기타사업의 경우 50%로 하향 조정하여 제재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1.2 평가 기준

4.1.2.1 단계별 평가기준의 마련

지원기업이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지원하면 평가위원회는 이들 기업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외건설협회의 지원사업에는 플랜트 산업협회, 엔지니어링 협회, 전기공사협회의 지원사업에 비해 많은 기업들이 지원하고 있다. 전기 공사협회 지원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시행되어 지원 기업수가 저조하지만, 플랜트 산업협회와 엔지니어링협회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수보다 해외건설협회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수가 약 3배 많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지원사업 특성, 예산, 지원방식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만 해외건설협회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가 방식은 각 협회가 모두 유사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원평가를 위해 평가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가기준은 크게 프로젝트 실현여건(55%), 해외건설 기여도(30%), 사업내역(15%)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 평가 지표 중 정량 지표인 발주국 신용도(5%)와 신청기업의 해외건설 기여도(10%)를 제외한 다른 지표들은 모두 정성적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형식적 요건 평가, 정량 지표 평가, 정성 지표 평가의 단계별 평가가 필요하다.

(1) 1단계 형식적 요건 평가

해외건설협회에서 1차적으로 접수된 지원기업들의 형식적 요건 등을 평가하여 하기의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는 지원기업들을 1차적으로 제외시킨다.

구체적 사례) 해당공종 해외건설업 미신고업체

유사 지원기관 중복지원 사업

국내업체 하청사업 또는 국내업체간 경쟁사업

타당성(F/S) 사업의 경우 발주처 확인 서류 미비

입찰일 경과(개발사업의 경우 최종 사업허가 이후 등)

시공중인 프로젝트

프로젝트 실체 불분명, 추진일정 장기화,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2) 2단계 정량지표 평가

1단계 평가 후 해외건설협회에서 타당성 사업과 현지수주 교섭 초청사업인 기타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기업들의 계량지표를 평가하여 총 평가점수가 60% 미만인 기업들을 제외시킨다.

<계량지표 평가>

구분		100%	80%	60%	40%
시장 개척 (40%)	신청국가 진출기반(20%)	없음	최근 5년내 진출실적보유 ⁷⁾	현지법인 또는 지사 운영	수행중인 프로젝트 보유
	동일국가 지원실적(20%)	없음	2회이내	3~4회	5회이상
복수 신청 ⁸⁾ (5%)	2건이상 신청한 경우	1순위 및 단일 사업 신청	-	2순위	3순위 이하
집행 실적 (20%)	누적지원금 집행율 평균	80%초과	70%초과 ~ 80%이하	60%초과 ~ 70%이하	60%미만 또는 지원결정 후 협약체결 포기 2회 이상
신용 도 (5%)	발주국 신용도 (OECD 평가결과)	A	B	C	D

시공 능력 (15%)	해외건설 수주실적 (10%) (최근3년간 해외 건설 수주실적)	1,000만\$이상	700만\$이상	400만\$이상	400만\$미만
	국내 도급순위(5%)	100위 이내	200위 이내	300위 이내	300위 초과
재무 건전 성 (15%)	자본금 규모(5%)	30억이상	20억 이상	10억 이상	10억 이하
	부채비율 ⁹⁾ (5%)	150% 이하	200% 이하	250%이하	250%이상
	유동비율 ¹⁰⁾ (5%)	250%이상	200%이상	150%이상	150%이하

(3) 3단계 정량지표 평가

1단계와 2단계 평가 후 형식적 요건과 계량적 평가의 60%이상을 득한 지원기업을 평가 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기존 평가지표에서 계량 지표로 분류되는 발주국 신용도와 신청기업의 해외건설 기여도 항목을 제외한 사업별 정성적 평가항목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4.1.2.2 가점 및 감점 기준의 변경

현재 관리지침 10조에 따르면 공동추진사업, 타당성 조사(F/S) 사업, 중소기업 추진 사업, 우수해외건설업자, 합작수주·시공업자, 기술개발 투자업자, 대리 시공자가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 할 수 있으며, 해외 진출 기여도가 낮은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수주확대 효과가 큰 플랜트 산업의 경우는 시장개척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관리지침 3조 1호 및 2호(미진출 국가 프로젝트,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점 및 감점 기준과 우대기준을 정한 취지와 의의가 있으나 중복 적용 및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기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
- 7) 지원시 수행중인 프로젝트는 없음
 - 8) 지원기업이 지정한 우선순위별로 평가
 - 9) 부채비율 = 부채 총액/자기 자본
 - 1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1) 공동추진사업

공동 추진사업은 공기업과 민간기업 또는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말하며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하고 있다. 가산점 한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현재 지원기업 선정시 민간기업 공동 추진시에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3점, 민간기업과 공기업 공동추진시에는 4점을 부여하고 있다. 동 규정의 취지는 해외건설 경험 및 파급효과 확대가 큰 사업의 지원을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은 존속되어야 하나 가점에 대한 한도와 기준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우수해외건설업자, 합작수주·시공업자, 기술개발 투자업자, 대리 시공자

해외 건설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우수해외건설업자, 합작수주·시공업자, 기술개발 투자업자, 대리 시공자는 다음과 같다.

- 우수해외건설업자(해외건설 촉진법 제 16조):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해외건설실적이 우수한 해외건설업자
- 합작수주·시공업자(해외건설 촉진법 제 17조): 국토해양부 장관이 국제경쟁력의 강화와 대규모공사의 수주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인 이상의 해외건설업자에게 권고하여 합작수주 및 시공을 하는 해외건설업자
- 기술개발 투자업자(해외건설 촉진법 제 18조):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공사를 수주하여 그 수주액의 일부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업자
- 대리시공자(해외건설촉진법 제 33조): 해외건설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신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발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해외 공사를 대리시공하는 다른 해외건설업자

상기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건설에 기여도가 우수한 점을 감안하여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기준을 마련 한 것이다. 그러나 우수해외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사례가 없어, 그 실체가 없다. 또, 평가기준의 ‘신청기업의 해외건설 기여도’ 라는 항목 평가시 지원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을 평가하고 있어 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적용 기준이기도 하다. 그리고, 합작수주·시공업자는 공동 추진 사업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이다. 따라서 해외우수건설업자는 현실적용 불가 및 중복적용 규정이며, 합작수주·시공업자는 가산 규정이 중복적용 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

기술개발투자자와 대리시공은 건설기술 선진화와 대외 공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수 해

외건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의 우대 기준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정부의 중점지원분야 우대기준 마련

정부는 우리 해외건설의 양적성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해외건설 5대 강국진입을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세부추진대책 중의 하나로 ‘물 산업’, ‘도시개발’, ‘교통 인프라’, ‘그린 에너지’ 분야를 중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분야로 선정 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추진전략과 부합할 수 있도록 중점지원분야에 대한 사업 신청시 우대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4) 중점지원국 진출시 우대기준 마련

매년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외건설시장 개척의 중점지원국을 발표하고 있는바 동 국가에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사업 신청시 우대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해외건설 기여도 저조

해외건설 기여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기본 평가기준에 해외건설 기여도에 대한 동일 평가항목이 있음에 따라 동 규정은 중복 적용되는 항목이다. 또 감점기준은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규정에 대한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과태료 납부 실적 기업

해외 건설사업 추진기업이 해외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해외건설업의 신고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해외건설촉진법 제 37조~제 41조의 규정에 의해 5년 이내에 벌칙 및 과태료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 평가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공사의 성실시공과 해외건설업의 신고 의무사항 이행을 촉진하고 미 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4.1.3 예산 불용 감소

4.1.3.1 자문료 한도제한 폐지

현재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정산 매뉴얼에 따르면 사업비목 중 자문료는 타당성 사업의 경우 15백만원, 현지수주 교섭 및 초청사업인 기타사업은 5백만원을 한도로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엔지니어링협회와 전기공사협회의 경우 자문료에 한도가 없으며, 플랜트 산업협회의 경우 자문료라는 직접적인 항목은 없으나 유사 비목으로 현지 전문가 항목과 외주 용역비 항목이 있으며, 현지 전문가 비용은 한도가 없으며, 외주 용역비의 한도는 10만\$로 해외건설협회 자문료 한도보다 월등히 높다.

실제 해외 수주활동을 위해서는 금융, 세제, 법률, 회계, 기술 자문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다. 실제 지원기업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2009년 자문료 한도로 인한 부인 금액〉

(단위: 천원)

연도	프로젝트 건수	한도초과 금액	추가 집행금액(지원을 적용 후)
2007년	4	16,658	8,909
2008년	5	76,980	40,149
2009년	9	59,435	22,611
합 계	18	153,073	71,669

따라서 자문료 한도를 폐지하여 지원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로 인한 지원 금액 증가는 예산 불용액이 감소하는 효과로 나타난다. 2007년 ~2009년 까지 최근 3년간 정산에 의하면 자문료 한도 초과로 인해 17백만원 ~ 59백만원의 자문료가 부인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자문료 한도 규정이 없었다면 9백만~23백만원 만큼 협회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동 금액만큼 불용액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4.1.3.2 국내 인건비의 인정

현재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관리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타당성 사업의 해외 인건비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당성 사업의 경우 해외 출장으로 인한 현지 타당성 조사 업무 수행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타당성 관련 업무가 진행된다. 해외업무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및 해외 출장 후 진행되는 후속 업무로 인해 해외업무 수행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국내에서 업무가 진행 될 수 있다. 플랜트 산업협회의 경우 국내외 인건비 구분 없이 타당한 범위내에서 해당 사업기간의 필요인원수와 월 투입요율을 인정하여 인건비를 인정하고 있다. 단, 사업수행자의 월 투입 요율은 70%이내, 총 인건비는 사업비의 60%이내의 한도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업무수행의 타당한 범위내에서 국내 인건비를 인정하면 예산 불용액의 감소, 기업의 해외 수주활동 지원 강화, 지원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국내 인건비의 경우 투입기간 및 요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 문제가 있으므로, 발생한 해외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국내 인건비로 인정하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국내 인건비의 지원 비율을 50%로 가정하였을 경우 2007년~2009년까지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2009년 해외 인건비 집행 현황 및 국내인건비 인정 효과〉 (단위: 천원)

연도	해외 인건비 정산	국내 인건비 인정(50%)	추가 집행금액(지원을 적용 후)
2007년	351,009	175,505	116,028
2008년	526,630	263,315	131,643
2009년	576,665	288,333	157,263
합 계	1,454,304	727,153	404,934

4.1.4 정산 관련 관리지침의 변경

4.1.4.1 정산 매뉴얼의 적절한 승인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정산을 위한 관련 규정은 관리지침 및 정산 매뉴얼이 있으며, 관련 기관은 평가위원회 및 해외건설업협회, 국토해양부가 있다. 관리지침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제정 및 개정되나 정산매뉴얼에는 제정 및 개정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정산 매뉴얼은 사업비 집행의 기준이 되는 정산의 세부내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산 매뉴얼은 '09년부터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작성하여 게시하고 있다.

정산 매뉴얼이 관리지침과 평가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작성되고 있기는 하나 정산을 위한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므로, 관리지침에 동 사항에 대한 승인절차를 포함한 제반 사항의 제정이 필요하다. 관리지침에 정산의 세부내역은 전담기관이 정산매뉴얼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정산매뉴얼의 제정 및 개정은 평가위원회 및 전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4.1.4.2 사업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산

현재 관리지침 및 정산매뉴얼에는 사업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이 없어 연도별, 회사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비용에 대한 정산의 일관성이 없다.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해당 기업의 지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인 관계로 지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 지원기업은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비의 지원으로 인해 2중으로 지원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관리지침에 '지원대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4.3 예외 비용 및 기타비용 인정

해외플랜트 협회와 엔지니어링 협회의 경우 사업 비목에 '기타비용' 항목을 포함하여 비용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의 경우 관리지침에는 나열된 비목만 인정하고 있어 예외 비용 및 기타비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사업비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경우 비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사

업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결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정 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원기업의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현지수주교섭 및 초청사업에는 외주용역비가 인정되지 않지만, 현지 교섭의 경우 사업 진행상 외주용역이 필요한 경우(현지 분양시장 현황 파악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수주교섭 사업에도 외주용역비를 인정 할 수 있도록 한다.

4.1.4.4 출장지 등급 결정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시 출장지의 등급을 네 등급으로 나누어 체재비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각 등급별로 해당하는 나라 및 도시를 열거 하고 있다. 다만 출장지가 열거된 도시 및 나라에 속하지 않을 경우 출장지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가 속하는 나라의 등급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출장지의 경우 해당 규정으로 정해지는 등급의 출장지를 잘못 적용하여 정산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출장지의 물가를 반영한 적절한 등급을 적용하기 위해 협약 체결 시 출장지의 등급을 결정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4.1.4.5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업체의 정산업무 총괄

현재 공동사업 정산시 사업에 참여하는 각 업체별로 정산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정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동일 영수증 중복 청구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의 대표업체가 총괄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정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고, 예산 편성에 따른 각 기업의 사업 진행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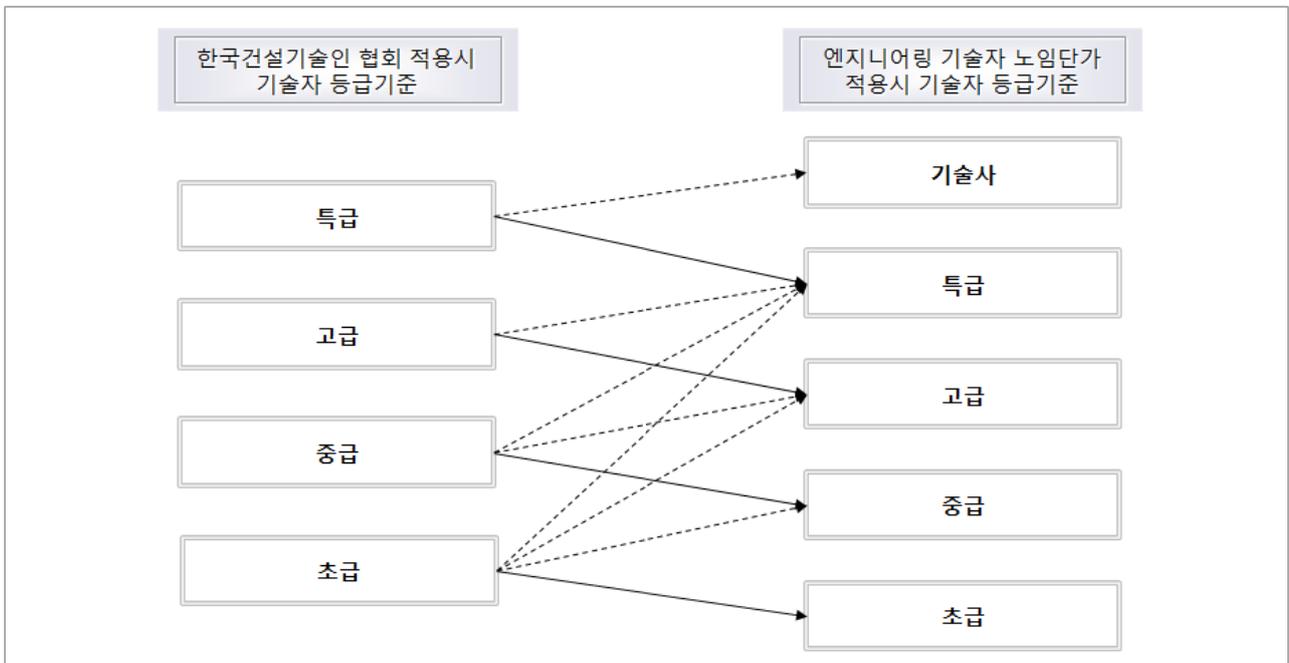
4.1.4.6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한 사업비용 인정

현재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1년이며, 지원대상 사업비도 사업기간내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정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기간 종료 후 추진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기간 후 지출한 비용이라도 그 지출원인이 당해 추진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전담기관이 당해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적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의 특성상 사업기간 후 발생할 수 있는 ‘인쇄비’, ‘자문 및 외주용역 잔금’, ‘번역비(통역비 제외)’ 로 한정 할 필요가 있다.

4.1.4.7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시 공고 강화

현재 인건비의 정산시 표준 노임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를 적용하며, 관련 증빙으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고시하는 기술자 등급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에 표시되는 기술자 등급의 기준이 상이하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의 등급은 특급기술자 상위 단계로 기술사 등급이 있으며, 등급 기준의 판단에 기술 및 경험기준 외에 학력 및 경험기준이 있으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등급 판단 기준은 기술사 등급 없이 기술사를 특급으로 인정하며, 초급의 경우에만 학력 및 경험기준이 있다. 따라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의 등급 판단기준으로 기술사가 특급에 해당하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의 등급 기준으로는 특급의 상위단계인 기술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학위 및 경험 기준에 의해 초급 기술사가 고급 기술자에 해당 할 수도 있다.



즉 관리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의 등급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이 지원기업에 유리하다. 그러나 인건비 정산시 지원기업들의 다수업체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의 등급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여 지원금액이 과소집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산매뉴얼 공고시 이러한 사실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원기업들이 관리 지침에 의거 적정한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V. 본 용역 보고서 이용의 유의사항

본 용역 보고서 이용의 유의사항

본 용역 수행 범위 중 사업비 정산 재검토는 해외건설협회 및 외부 정산기관의 정산결과와 지원기업의 세부 관련 증빙을 관리 지침 및 정산 매뉴얼의 정산규정과 비교하여 수행된 정산이 정산 규정의 세부 내역에 따라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재검토는 증빙의 진위 여부나 부정 여부를 검토 한 것은 아니며, 정산규정에 위배 되는 항목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의견이나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VI. Appendix

5.1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관리지침- 해외건설협회

2003.	1. 15	제정
2004.	3. 19	1차 개정
2005.	2. 24	2차 개정
2006.	2. 14	3차 개정
2007.	1. 24	4차 개정
2007.	9. 10	5차 개정
2009.	1. 13	6차 개정
2009.	12. 29	7차 개정
2010.	5. 24	8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이하 “시장개척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시장개척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해외건설협회를 말한다.
2. “신청기업”이라 함은 해외건설촉진법상의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한 자로 당해 연도의 시장개척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라 함은 해외건설촉진법상의 해외공사로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4. “지원기업”이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당해 연도 시장개척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개척사업의 범위) 시장개척사업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2. 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의 프로젝트(개정, '07.1.24)
3. 미개척 다국적기업, 개발업자, 국영석유회사 등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

제4조(지원사업의 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외건설사업 수주 관련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사업
2. 기타 지원사업
 - 가. 발주처(프로젝트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방한 연수 지원(개정, '07. 9)
 - 나. 현지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지원
 - 다.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개척 차원의 지원사업

제5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
 4. 지원사업 수행의 감독 및 사업비 정산환수
 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6. 차기년도 시장개척지원 사업의 수요조사
 7.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처리
 8. 2개 이상의 기업이 대리 시행을 요구하는 사업의 수행
 9. 제4조 제2호 다목 관련 지원사업의 수행을 주관하되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07.1.24)
 - 가. 지원범위는 민관 합동 시장조사단 파견 또는 업계 공동 차원의 발주처 인사초청 행사.(개정, '07. 9)
 - 나. 지원비용은 별표4의 직접 인건비 및 직접경비 전 항목. 단, 민관합동 시장조사단 파견사업의 지원비용은 별표4의 직접경비 중 현지 차량임차료, 현지 회의 제경비, 통역비, 통신비로 한다.(개정, '09. 12, '10.5.24)
 - 다. 지원금액의 범위는 당해연도 예산의 20%이내(개정, '09. 12)
 - 라. 평가위원회의 심의
- ② 전담기관의 장은 본 지침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예산의 3% 이내에서 동 사업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개정, '07.1.24)
- ④ 전담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공고 이전에 미리 예산사용 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평가위원회

- 제6조(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위하여 해외건설시장개척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
-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중 해외 건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해외건설과장으로 한다.
-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업계, 금융계, 단체의 해외건설 관련 전문가 중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평가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전담기관의 해당 부서 관리책임자로 한다.

-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② 지원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타당성조사사업의 경우 별표1과 같으며, 기타 지원사업의 경우 별표2와 같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평가 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개정, '07.1.24)
-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따른 사업집행 우선순위 및 지원사업의 대상의 조정
 2. 지원신청서의 평가 및 지원사업의 선정
 3. 지원금액의 결정
 4. 사업결과의 평가
 5.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위원은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지원대상기업 또는 지원대상 사업에 관련된 인사일 경우 해당 지원신청서에 대한 심의 및 평가를 배제시킬 수 있다.
-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출석 등 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제8조(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전담기관의 장은 전국을 보급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 대중매체 및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개척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07.1.24)

1. 당해연도 사업의 총 지원예산
2. 시장개척사업의 범위 및 추진일정
3.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제9조(신청서 접수) ① 신청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서 10부.(전자파일을 첨부한다.)
 - 가. 지원신청 요약서
 - 나. 지원신청 내용 및 추진경위
 - 다. 신청기업의 사업수행능력
 - 라.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 사업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마. 수주가능성 및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자체 평가
 - 바. 발주처, 외주용역기관 등 지원신청사업과 관련된 기관에 관한 소개자료
 - 사. 기타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2.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신설, '07.1.24)
4.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신설, '07.1.24)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실적이 저조한 경우 추가 접수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 접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접수에 관한 내용은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되 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은 15일 이내에 보완자료 및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1 또는 별표 2의 사업평가기준에 근거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④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⑤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집계한 종합평점의 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 ⑥ 공기업과 민간기업 또는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이 경우 공기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09. 12)
- ⑦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선정 후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지원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사업 선정절차에 의한다.
- ⑧ 평가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집계된 종합평점에 5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⑨ 평가위원회는 수주확대 효과가 큰 플랜트(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를 말한다)사업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⑩ 전담기관의 장이 제6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09. 12)
- ⑪ 제4조 제1호 관련 사업을 신청시 우대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과 발주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서한, 양해각서, 의향서 등을 제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신설, '07.1.24)
- ⑫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안한 사업 중 해외진출 기여도가 낮은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집계된 종합평점에 5점의 범위내에서 감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신설, '07.1.24)
- ⑬ 평가위원회는 해외건설촉진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해외건설업자, 합작수주시공업자, 기술개발 투자업자, 대리시공자가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대할 수 있다.(신설, '07. 9)

제11조(지원금액 결정) ① 지원사업의 건당 지원 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한다.

② 총 사업소요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의 1로 하되, 해외

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해외건설업자는 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07.1.24)

1. 대기업 단독 : 40%이내 (개정, '09. 12)
2. 중소기업 단독 : 70%이내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 대기업은 50%이내, 중소기업은 80%이내 (개정, '09. 12)
4. 중소기업간 공동 : 80%이내

③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소요예산이 [별표4] 및 다음 각 호의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타당성 조사사업

가. 신청기업이 해외건설촉진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신고 업체일 경우에는 [별표 4]의 직접 인건비 및 직접경비 전 항목을 인정하며 외주용역 계약 체결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나. 신청기업이 건설엔지니어링업 신고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별표4]의 직접경비 전항목만 인정되며 외주용역 계약체결시에는 직접 인건비와 직접경비 전항목이 인정된다.

2. 기타사업

가. 현지수주교섭 및 조사활동사업 지원시 [별표4]의 직접경비 전 항목만 인정된다.

나.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방한 연수사업 지원시 [별표4]의 직접경비 전항목만 인정된다.

④ 평가위원회는 지원사업 예산의 70%이상이 중소기업에 지원되도록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사업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70%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07.1.24)

제12조(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신청기업에게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표 3의 제출서류목록을 참고하여 협약서류를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지원기업은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 변경
2. 사업기간 변경
3. 사업금액 변경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

제15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관련서류의 미제출
2. 사업비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3.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지원기업의 의무)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이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 부담
2. 사업책임자의 지정, 사업 수행의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
3.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

제17조(지원금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수시로 지원기업에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09. 12)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신청한 서류를 심사하여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는 사업종료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09. 1)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기준하여 미달 집행하는 경우 지원비율을 실제 집행금액에 협약시 정한 비율로 하며 초과 집행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09. 1)

제4장 사 업 관 리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 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는 정부지원금 및 지원기업의 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책임자는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목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비목을 변경할 수 있다.
4. 지원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조사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간 요약보고 및 점검) ① 지원기업의 대표자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사업계획대비 추진상황이 포함된 중간요약보고서를 분기종료후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7.1.24)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된 중간요약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별로 계속수행의 필요성 여부를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07.1.24)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계속수행이 불요하다고 결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해약조치 하고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규사업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09. 12)

제20조(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타당성조사사업은 타당성조사보고서를 포함한다.

1. 지원사업 개요
2. 추진 경과
3. 추진 결과
4. 전망 및 향후 계획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위원회는 사업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적정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업으로 하여금 사업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또는 추가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의 조치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하여 지원기업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결과의 확정 및 활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의하여 사업결과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9. 12)

② 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사업에 한하여 확정된 최종 사업결과보고서를 해외건설업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업의 수주활동과정에서 보고서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주활동 종료시까지 공개를 유보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사용실적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내역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토한 후 부적합한 집행 또는 증빙서류의 미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외국기업에 지급한 사업비의 정산은 외국기업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액을 확정하고, 차감지급 또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의 효율적인 실시와 정산결과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문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하고, 이를 지원사업 사업비로 인정한다. (신설, '07. 9)

④ 전담기관의 장은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계법인에 정산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정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07. 9)

제23조(제재, 환수 및 반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동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를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제조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는 정부지원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환수 결정 후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09. 12)

3.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지원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이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개척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지원기업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협약 지원금액의 70%이상을 집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시장개척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미집행의 귀책사유가 당해 기업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07.1.24)

⑥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지원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결과 보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수하여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09. 12)

제24조(수요조사의 실시) 전담기관의 장은 차기년도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매년 4월 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사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주활동이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종료후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6.2.14)

② 지원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06.2.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3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3조4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의 개정규정은 '07년 1월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제1항 제9호 나목 규정에 의한 발주처 인사 초청을 위한 필요 경비에 대해서는 '10년 1월 이후 시행된 행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타당성조사사업 평가기준

평가일 : 년 월 일

평가위원 :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사유
		A	B	C	D	
1.프로젝트 실현 여건 (55)	1-1재원조달 가능성(20)	20	18	16	14	
	1-2발주국 신용도(5)	5	4	3	2	
	1-3프로젝트 실현가능성 (20)					
	1-4프로젝트 수주가능성 (10)	10	9	8	7	
2.해외건설 기여도 (35)	2-1 신청기업의해외건설 기여도(10)					
	2-2 신청사업의시장개척 효과(10)					
	2-3.공사내용의 발전성 (10)					
3.사업내역 (10)	2-4외화가득 효과(5)					
	3-1사업내역의 합리성(5)					
	3-2예산의 적정성(5)					

[별표 2]

기타 지원사업 평가기준

평가일 : 년 월 일

평가위원 :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사유
		A	B	C	D	
1. 프로젝트 의 평가 (25)	1-1. 발주자 및 재원의 신뢰도(10)	10	9	8	7	
	1-2. 공사내용의 발전성 (10)					
	1-3 발주국 신용도(5)	5	4	3	2	
2. 수주 가능성 (40)	2-1 수주활동 진행내용 (10)					
	2-2 발주처 및 협력업체 관계(10)					
	2-3 예상경쟁관계(10)					
3. 해외건설 기여도 (25)	2-4 후속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10)					
	3-1 신청기업의 해외건설 기여도(15)	15	13	11	9	
	3-2 신청사업의 시장개척 효과(10)					
4. 사업내역 (10)	4-1 사업내역의 합리성(5)					
	4-2 예산의 적정성(5)					

[별표 3]

협약체결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간인	비 고
1	정부지원금 입금구좌	1	사본	-	- 예금주, 계좌번호
2	사업자등록증	1	사본	-	
	인감증명서	1	원본	-	- 최근 6개월 이내 유효
3	지원대상기업 담당자의 신분증	1	사본	-	- 업무 연락시 필요 - 사업책임자
4	협약서	2	원본	필요	- 전담기간/지원기업간 체결
5	사업비 세부내역 및 집행계획	2	원본		- 사업계획서에 첨부
6	사업제안서	2	원본	-	- 수정사업제안서 참고, 재작성 - 신청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첨부서류는 재제출하지 않음
7	참여기업과 외주용역기업간의 계약서	2	사본 가능	필요	- 참여기업이 외주용역으로 시장개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출 - 참여기업 대표와 외주용역기업 대표간체결 - 참여기업 및 외주용역기업 원본보관

[별표 4]

사업비목 구분 및 증빙서류

관	항	목	증빙서류	비 고
직접 인건비	직접 인건비	직접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조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체류기간 증빙서류 · 여권사본 · 출입국 증명서류 등 ○ 발주처인사 초청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보조요원 고용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는 타당성조사사업과 발주처 인사초청 행사만 인정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에 단가에 의함. 단, 제경비 및 기술료는 제외」 - 발주처 인사초청 행사의 임시 보조요원
직접 경비	국외 여비	국제 항공료	항공료 지불 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항공료는 실비정산 - 체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수하되, 초과 숙박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 - 자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 동행시 여비 인정
		체재비	여권사본, 출입국 증명 또는 현지 체류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경비	현지 항공료	항공료 영수증	현지조사를 위해 내국의 지역 간 이동에 소요된 항공료
		현지 교통비	현지 교통비 영수증	지역간 이동에 소요된 교통비 차량임대기간과 중복 불가
		현지 차량 임차료	임차 영수증	임대회사, 차종, 임차기간 등 제출
		현지 회의 제경비	경비지출 영수증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결과 등 별도 제출
		자료 수집비	자료구입 영수증	자료명, 가격, 구입일 등 제출
		자문료	관련 영수증	금융, 세제, 법률, 회계, 기술자문 비용
		통·번역비	관련 영수증	통·번역에 소요된 비용
		보고서 인쇄비	관련 영수증	타당성조사 등 발주처 제출용 보고서 인쇄비
통신비	관련 영수증	현지 로밍 등 증빙 영수증		
사업비 정산 수수료	회계법인과의 약서 및 관련 영수증	지정 전문회계법인에 지출한 수수료 영수증		

서 약 서

본인은 해외건설 시장개척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본인은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또는 서명)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제6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갑)은 동 지침 제17조(지원금의 지급) 및 제 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동 지침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① (갑)과 (을)은 본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동 지침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9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1. 사업제안서 1부

2. 지원기업과 외주용역기업의 사업계약서(외주용역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년 월 일

(갑) : 전담기관장 (인)

(을) : 지원기업 대표 (인)

사업책임자 : (인)

5.2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 - 한국플랜트 산업협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이하 “타당성조사사업”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 이라 함은 타당성조사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사)한국플랜트산업협회를 말한다.
2. “신청기업” 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타당성조사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3. “플랜트” 라 함은 발전소,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원유가스처리시설, 해양설비, 환경설비시설 등과 같은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기계, 공작 기계, 전기 통신기계 따위의 종합체로서의 생산시설이나 공장을 말한다.
4. “프로젝트” 라 함은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한시적인 과업의 총칭을 말한다.
5. “참여기업” 이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당해연도 타당성조사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지원프로젝트” 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의 신청프로젝트를 말한다.
7. “타당성조사사업” 이라 함은 해외 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9. “중견기업” 이라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상인 기업으로서 별표6.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타당성조사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2.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해외플랜트 프로젝트
3.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 전략플랜트 프로젝트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해외 플랜트 수주확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외

시장조사, 수주교섭, 홍보 등 해외 플랜트 수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평가위원회) ①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사업 지원 프로젝트의 평가를 위하여 20명 내외의 플랜트 분야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타당성조사사업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전담기관의 장이 ①항의 전문가 그룹에서 위촉하는 8인, 전담기관 상근책임자, 지식경제부 담당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평가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전담기관의 타당성조사사업 관리책임자로 한다.

④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청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선정

2. 지원금액 결정

3. 결과보고서 평가

4. 참여기업의 의무 또는 이행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 심의

5. 기타 선정·평가·제재와 관련하여 전담기관 요청사항

⑥평가위원은 평가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참여기업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게 누설하는 등 평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평가위원으로 위촉 시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평가위원회는 필요시 평가의 효율·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용평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2.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3.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사업수행 지도·감독 및 사업비 정산·환수

5. 결과보고서 접수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6. 타당성조사사업의 수요조사

7.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

8. 기타 타당성조사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참여기업)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사업의 협약 체결 및 수행

2. 정부지원금 이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민간부담금 확보

3. 사업책임자 지정, 타당성조사사업의 중간진행상황 및 최종결과보고
4. 관계법령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
5. 타당성조사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보고 등

제 3 장 시행계획의 공고 및 사업선정

제7조(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①전담기관의 장은 일간신문 등 대중매체 및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조사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사업의 총 지원예산
2. 지원대상 사업 및 추진일정
3.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해외 플랜트 발주수요,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 2~3회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8조(신청서 제출) ①신청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제안서 10부(파일 첨부)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요약서
2. 프로젝트 설명 및 추진경위
3. 프로젝트 시행이 발주국의 경제개발에 미치는 영향
4. 프로젝트 수주시 잠재적인 수출효과(외화가득률, 국내에서 조달가능한 품목, 용역, 협력업체 리스트 및 예상 금액)
5. 신청업체의 타당성조사 수행능력(또는 전문용역업체의 조사수행능력)
6.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 조달계획
7. 타당성조사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별표3 참조)
8. 발주예상기관과 신청기업의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수행에 관한 양해각서(MOU), 또는 발주예상기관이 신청기업에게 타당성조사 수행을 요청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 또는 서한(Letter)중 1건 이상의 문서
9. 발주예상기관의 사업추진 능력
10. 기타 관련자료

②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동 기간내에 보완하지 않는 때는 신청한 타당성조사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③전담기관은 신청업체 및 제출자료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 접수 저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접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제9조(사업신청서 검토)**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타당성조사사업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②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참여기업의 지원프로젝트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의 내용에 의한다.
- ③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한 프로젝트의 내용 및 업체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④평가위원은 타당성조사사업 평가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10조(사업선정)** ①평가위원회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으로 신청기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②평가위원회는 당해연도 타당성조사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참여기업에게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 ④평가위원회는 참여기업이 회계법인 등 전문 컨설팅 회사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참여기업에게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
- ⑥평가위원회는 제14조와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중도포기, 선정사유 소멸 등으로 예산의 여분이 있을 경우 잔여예산으로 탈락한 신청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점수 순으로 예비참여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 제11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서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 ③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이 자체 검토 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각 또는 재상정 여부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 4 장 협약의 체결, 변경, 해약 등

- 제12조(협약의 체결)** ①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협약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참여기업 대표와 협약을 체결한다.
- ③협약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④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시 제출서류(별표 2)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선정적격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후에 개최되는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전담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의 입금여부를 확인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⑥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을 소급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 ⑦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의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제13조(협약의 변경)** ①참여기업의 사업책임자(이하 “사업책임자” 라 한다)는 협약체결 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협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협약의 변경승인 요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여기업의 변경승인 요청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사업책임자 변경요청시 이력서
 3. 외주용역기업의 변경요청시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수행 동의서
 4. 사업비의 비목 변경요청시 변경사용내역
 5. 조사기간 변경요청시 변경사유서

- 제14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타당성조사사업비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2.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타당성조사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전담기관의 장은 ①항에 의하여 협약의 중지 및 해약발생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정산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 업 비

- 제15조(지원금액)** ①평가위원회는 신청서의 사업예산이 다음 각 호의 비목 및 별표 3의 「사업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

사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인건비

2. 경비

가. 국외여비

나. 현지경비

다. 국내경비

라. 외주용역비

3. 제경비 및 기술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국비지원 사업기간은 10월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③참여기업별 지원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지원프로젝트당 정부지원금의 한도는 2억원 이내로 한다.

1. 중소기업 70%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대기업 50% 이내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60% 이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70% 이내

④평가위원회는 정부지원금의 70%이상을 중소기업 신청 프로젝트에 지원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신청사업 중 지원 적합한 사업이 없어 70%에 미달할 경우 중견 및 대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선정 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에서 ④항에 의하여 중견 및 대기업 지원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을 경우 그 사유와 중소기업지원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금의 지급)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지원금의 70%는 협약서 체결후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지원금의 나머지 30%는 참여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 타당성조사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사업비 정산 결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수금액을 차감후 지급한다.

제17조(민간부담금) 현금납입증명서류는 결제계좌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사업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사업비(정부지원금 및 참여기업 부담금)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책임자는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비는 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사업비는 협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내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전담기관이 당해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조사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6. 외주용역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외주용역기업의 장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 내역을 별표 3의 「사업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타당성조사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 10호 서식에 의거하여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정산서류에 대하여 관련 지침 준수 및 사업비 적정사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탁정산기관(전문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하고, 이를 타당성조사 사업비로 인정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계법인에 정산업무위탁 할 경우 위탁정산기관과 업무협력협정서를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부실정산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⑤위탁정산기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 1. 위탁정산기관은 관련법령 및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적정 사용여부,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참여업체에 소명·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 2.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대하여 참여업체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정산결과(정산액, 최종잔액, 수정·보완 내용 및 사유)를 확정하고, 전담기관으로부터 정산을 의뢰받은 후 30일 이내에 정산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정부지원금 잔액은 협약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여기서, “최종잔액”이라 함은 협약으로 정한 현금총액과 실제 사용한 현금총액의 차를 말한다.

$\text{정부지원금 잔액} = (\text{최종잔액}) \times \frac{\text{정부지원금액}}{\text{정부지원금액} + \text{민간부담금액}}$
--

- 4. 외국기업에 지급한 경비의 정산은 외국기업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5.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결과(정산액, 최종잔액, 수정·보완 내용 및 사유)를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으로 위탁정산기관에서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사업비 적정사용여부, 사업의 목적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감 지급 또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에 대하여 정산결과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보고서를 미제출할 때에는 사업비 집행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중간점검 및 평가

제20조(중간 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①사업책임자는 협약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협약기간의 반기가 되는 시점에 사업비 집행내역(별지 제11호 서식)을 포함하여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별지 제7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업체가 제출한 중간진행상황 보고서를 통해 타당성조사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참여업체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실사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업체가 보고한 중간진행상황 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실사 결과를 직후 개최되는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②항에 의한 실사결과 참여기업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사안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사업중단 조치후 평가위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①사업책임자는 타당성조사 사업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 각 7부 및 보관용 C/D 1장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타당성조사결과보고서 평가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4호의 내용에 의하고,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빼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의한 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또는 추가조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전담기관의 보완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하여 참여기업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2항에 의하여 조사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결과의 확정 및 활용)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1조에 의하여 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조사결과로 확정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

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요청할 때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장 사 후 관 리

- 제23조(제재 및 환수)** ①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본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별표 5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구체적 제재조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 ③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는 정부지원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환수 결정 후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현금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프로젝트가 원활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제1항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4조(사후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타당성조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지원대상 프로젝트의 개발 추진상황을 반기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참여기업은 전담기관의 프로젝트 개발 추진상황 점검 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참여기업은 타당성조사 지원 프로젝트(연관프로젝트 포함) 수주시 전담기관에 수주실적(계약서 첨부)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 제25조(세부규정 등 제정)** ①전담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6조(관리운영예산)**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의 5%이내의 금액을 타당성조사사업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정부예산사정에 ①항의 관리비용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기타) 이 요령 및 하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사항은 지식경제부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2008. 1.)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선정되는 지원프로젝트부터 적용한다. 단, 고시일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 중 참여기업이 전담기관에 정산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본 지침의 제23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24조(제재 및 환수)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6. 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후 최초로 선정되는 지원프로젝트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4. 2.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종결과보고서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3. 6.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9.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당시에 이미 지원대상
으로 선정된 사업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2. 4.25)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외 플랜트 타당성조사사업 선정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평점사유
1.프로젝트 실행가능성 (40)	1-1 재원조달 가능성 가. 공신력 있는 자금 기 확보 여부 나. 수출입은행, 국제금융기구, 수출신용 기관(ECA)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로 투자자 혹은 대출자 로부터 긍정적 의사 확보 여부	15		*항목별 가능 성에 따라 한 도안에서 점 수산정
	1-2 발주국 신용도 가. OECD 국가등급	5		
	1-3 발주처의 추진능력 가. 정부주도 나. 국영기업 혹은 관민 혼합기업 다. 프로젝트에 특별한 연고권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민간기업 등	15		
	1-4 기술적 가능성 가. 기술적용 가능 여부 나. 수주추진기업의 기술 확보 여부	5		
2.프로젝트 수주가능성 (20)	2-1. 발주처와의 관계 가. 발주처와 프로젝트 추진 경험 유무 나. 발주처가 우리나라와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15		
	2-2 발주국과의 관계 가. 정책적 자원부국 나. 국내기업 진출 여부 다. 외교관계	5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평점사유
3. 프로젝트 수행가능성 (25)	3-1 신청업체의 F/S수행 능력 가. 해외 프로젝트 F/S 수행경험 유무 나. 국내 프로젝트 F/S 수행경험 유무 다. 수행조직 확보하고 수행가능 유무	10		*항목별 가능 성에 따라 한 도안에서 점 수산정
	3-2 신청업체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 가. 유사 해외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나. 유사 국내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등	10		
	3-3 F/S 예산편성의 적정성 가. 인건비 적정 여부 나. 경비 적정 여부 다. 외주용역비 적정 여부 등	5		
4. 프로젝트 수행 과급효과 (15)	4-1 수출과급효과 가. 국내 생산 기자재, 용역 수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업가능성 여부 나. 후속 연관프로젝트의 가능성 다. 기타 과급효과 등	10		
	4-2 발주국 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개발 효과 나. 환경에 미치는 효과 등	5		

* 가산점 : 전문 컨설팅사와 공동 수행 시 총점에 가점(+5점)

[별표 2]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협약체결시 제출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간인	비 고
1	정부지원금 입금계좌신고서 (정부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입금용)	1	원본	-	- 예금주(법인 또는 대표자), 계좌번호 등 - 첨부 양식
2	통장사본	1	사본	-	- 예금주, 계좌번호 수록 면 - 민간부담금 입금 내역면 (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확인)
3	인감증명서	1	원본	-	-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4	사업책임자 신분증	1	사본	-	- 사업책임자 확인
5	협약서	2	원본	필요	- 전담기간/참여기업 간 체결 - 별지 제4호 서식
6	사업책임자 서약서	1	원본	-	- 별지 제5호 서식
7	사업계획서 (사업비 세부내역 포함)	2	원본	-	- 신청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비에 맞춰 사업계획서 작성 (상세하게 작성할 것)
8	참여기업과 외주용역기업간의 계약서(체결시)	2	사본 가능	필요	- 참여기업이 특정 부분을 외주용역으로 타당성 조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출 - 참여기업대표와 외주용역기업 대표간 체결 - 참여기업 및 외주용역기업 원본 보관

[별표 3]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사업비 산정기준 및 증빙서류

과 목 구 분			산정기준	증빙서류
대	중	소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고시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표」의 「산업공장」에 의거 인건비 산정 ○ 참여자의 참여율은 70% 이내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60%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서류 첨부
경비	국외 경비	국제항공료	○ 실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료 영수증 ○ 여권사본 또는 입출국 증명서류 등 (타당성조사관련 발주처 인사방한에 따른 출장경비 포함)
		체재비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되, 초과 숙박비는 실비정산	
		현지항공료	○ 실비정산	○ 항공료 영수증
		현지교통비	○ 현지 교통비 (현지 차량임대 및 유지비포함)	○ 관련 영수증
		사무실임차비	○ 현지 사무실 임차비	○ 관련 영수증
		회의제경비	○ 회의실 사용료 등 회의제경비	○ 관련 영수증 및 서류 - 회의자료(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 등) 첨부
		현지전문가	○ 현지전문가(통역 등) 비용	○ 관련 영수증
		통신비	○ 현지 사용 통신비	○ 관련 영수증
		기타경비	○ 공항세 등 기타경비	○ 관련 영수증
	국내 경비	국내출장비	○ 국내 출장비	○ 관련 영수증
		회의제경비	○ 회의제경비	○ 관련 영수증 및 서류 - 회의자료(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 등) 첨부
		자료수집비	○ F/S조사 목적의 자료에 한함 (국내외 포함)	○ 관련 영수증
		사무용품	○ 사무용품비(문구류, 복사비, 청사진비 등) (보존성 자산은 제외)	○ 관련 영수증
		인쇄비	○ 인쇄비	○ 관련 영수증
		정산수수료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규정	○ 정산시 발행
외주 용역비	외주용역비	○ 10만불 이내의 외주용역비 (국내외 시험분석비 포함)	○ 관련 영수증 및 서류 - 외주용역 계약서(작업범위, 조사분석, 자문 등) 첨부	

[별표 4]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평가기준표

평가 항목	세부 내역	배점	평점	비 고
성과물의 적정성	1) 프로젝트의 배경 분석	10		1), 2)항의 최고점수는 10점, 중간이상은 5점이상, 중간이하는 5점 이하로 평가
	2) 현지 수행활동	10		
	3) 시장조사	20		3), 4), 5), 6)항의 최고점수는 20점, 중간이상은 15점이상, 중간이하는 10점이하로 평가
	4) 기술조사	20		
	5) 재무분석	20		
	6) 성과 활용도	20		
합 계		100		
종합 검토 의견				○ 위 3)~5)은 환경, 시장, 기술 및 재무 분야의 적절한 분석이 본 타당성조사사업의 핵심이므로 이에 대해 정밀하게 종합 평가

[별표 5]

제 재 등 급 분 류 표

분 류 등 급	제 재 사 유	제재 대상	참여제한	환수금
1등급	○ 관리지침 제14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각 호에 해당되어 협약이 중지되거나 해약된 경우	참여기업, 사업책임자	5년	정부지원금 전액
	○ 사업수행이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	참여기업 사업책임자	2년	정부지원금 집행잔액
	○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관리지침 제20조제4항(중간진행상황보고 및 점검)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			
2등급	○ 관리지침 제21조(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의 평가결과 평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참여기업 사업책임자	1년	-
	○ 정당한 사유없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금 의 10%
	○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자료제출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별표 6]

대규모 기업집단(30위)

순위	기업집단명	소 속 회사
1	삼성	<p>□ 비금융·보험회사: 48 (주)가치네트, (주)삼성경제연구소, (주)삼성라이온즈, (주)씨브이네트, (주)아이마켓코리아, (주)이삼성인터내셔널, (주)에스윈, (주)오픈타이드코리아, (주)올렛, (주)제일기획, (주)크레듀, (주)호텔신라, 글로벌텍(주), 삼성광주전자(주), 삼성물산(주), 삼성석유화학(주), 삼성에버랜드(주), 삼성에스디아이(주), 삼성에스디에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삼성전기(주), 삼성전자(주), 삼성전자서비스(주), 삼성정밀화학(주), 삼성중공업(주), 삼성코닝(주), 삼성코닝정밀유리(주), 삼성탈레스(주), 삼성테크윈(주), 삼성종합화학(주), 삼육오홈케어(주), 시큐아이닷컴(주), 서울통신기술(주), 스테코(주), 삼성네트웍스(주), 제일모직(주), 케어캠프(주), 삼성전자로지텍(주), 세크론(주), 세메스(주), 리빙프라자(주), 한덕화학(주), 삼성토탈(주), (주)인터내셔널사이버마케팅, 에스엘시디(주), 에스디플렉스(주), 에쓰이에이치에프코리아(주), (주)에이스디지털</p> <p>□ 금융·보험회사: 10 삼성벤처투자(주),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선물(주), 삼성증권(주), 삼성카드(주), 삼성투자신탁운용(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생보부동산신탁,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주), 애니카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주)</p>
2	한국전력공사	<p>□ 비금융·보험회사: 11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한전기공(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케이디엔(주)</p>
3	현대자동차	<p>□ 비금융·보험회사: 34 기아자동차(주), 기아타이거즈(주), 비엔지스틸(주), 엔지비(주), 오토에머시스시스템즈(주), 현대제철(주), 해비치리조트(주), 케피코(주), 다이모스(주), 글로벌비스(주), 현대모비스(주), 현대자동차(주), 현대과워텍(주), 현대하이스코(주), (주)로템, (주)위아, 위스코(주), (주)엠코, 메티아(주), 아이에이치엘(주), 아이아(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엠시트(주), (주)이노션, (주)코렌텍, (주)카스코, (주)종로학평, (주)입시연구사, (주)현대오토넷, (주)만도맵앤소프트, (주)차산골프장지주회사, (주)카네스, (주)파텍스, 해비치컨트리클럽(주)</p> <p>□ 금융·보험회사: 3</p>

순위	기업집단명	소 속 회사
		현대캐피탈(주), 현대카드(주), 현대커머셜(주)
4	에스케이	<p>□ 비금융·보험회사: 58 (주)부산도시가스, 오케이캐쉬백서비스(주), (주)에스케이와이번스, 에스케이텔레시스(주), (주)에어크로스, (주)워커힐, (주)충남도시가스, 강원도시가스(주), 구미도시가스(주), 케이파워(주), 대한도시가스(주), 대한도시가스엔지니어링(주), (주)대한송유관공사, 스텔라해운(주), 에스케이(주), 에스케이가스(주), 에스케이건설(주), 에스케이네트웍스(주), 에스케이씨(주), 에스케이씨앤씨(주), 에스케이이엔에스(주), 에스케이엔제이씨(주), 에스케이유씨비(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서울음반, 에스케이텔링크(주), 에스케이해운(주), 엔카네트웍(주), 엠알오코리아(주), 이노에이스(주), 익산도시가스(주), 인포섹(주), 전남도시가스(주), 청주도시가스(주), 포항도시가스(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주), (주)팍스넷 티유미디어(주), (주)아페론, 글로벌신용정보(주), 에스케이유티스(주), 에스케이씨티에이(주), (주)인디펜던스, (주)인투젠, 에스케이모바일에너지(주), 에스케이유화(주), 에스케이씨미디어(주), 에스케이인천정유(주), (주)아이에이치큐, (주)와이티엔미디어, (주)아이필름코퍼레이션, (주)엔트리브소프트, 에스케이아이미디어(주), (주)엠파스, 에콜그린(주), 풀빵닷컴(주), 아일랜드(주)</p> <p>□ 금융·보험회사: 1 에스케이증권(주)</p>
5	엘지	<p>□ 비금융·보험회사: 31 (주)엘지데이콤, (주)데이콤멀티미디어인터넷, (주)데이콤크로싱, (주)실트론, (주)엘지경영개발원, (주)엘지상사, (주)엘지스포츠, (주)엘지생활건강, (주)엘지, (주)엘지씨엔에스, (주)엘지텔레콤, (주)엘지화학, 엘지필립스엘시디(주), 엘지다우폴리카보네이트(주), 엘지마이크론(주), 엘지석유화학(주), 엘지엠엠에이(주), 엘지이노텍(주), 엘지전자(주), 엘지엔시스(주), (주)서브원, (주)하이프라자, (주)엘지생명과학, (주)엘지파워콤, (주)씨텍, (주)브이이엔에스, 하이비즈니스로지스틱스(주), (주)루셈, (주)씨에스리더, (주)아인텔레서비스, (주)엘지패션</p>
6	대한주택공사	<p>□ 비금융·보험회사: 2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p>
7	롯데	<p>□ 비금융·보험회사: 41 (주)대흥기획, (주)롯데기공, (주)롯데닷컴, (주)롯데리아, (주)롯데삼강, (주)롯데자이언츠,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주)롯데햄, (주)롯데브랑제리, (주)코리아세븐, (주)롯데</p>

순위	기업집단명	소 속 회사
		<p>데아사히주류, (주)호텔롯데, (주)부산롯데호텔, 롯데건설(주), 롯데냉동(주), 롯데로지스틱스(주), 롯데물산(주), 롯데상사(주), 롯데쇼핑(주), 롯데알미늄(주), 롯데역사(주), 롯데정보통신(주), 롯데제과(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후레쉬텔리카(주), 한국후지필름(주), 호남석유화학(주), 롯데제약(주), (주)푸드스타, (주)롯데미도과, (주)씨텍, (주)케이피케미칼, (주)케이피켄텍, (주)롯데대산유화, 에프알엘코리아(주), 시네마통상(주), (주)웰가, 청라에너지(주), 대산엠엠에이(주), (주)우리홈쇼핑, 롯데제이티비(주)</p> <p>□ 금융·보험회사: 2 롯데캐피탈, 롯데카드(주)</p>
8	한국도로공사	<p>□ 비금융·보험회사 : 4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위더스, 한국도로공사, 부산울산고속도로(주)</p>
9	포스코	<p>□ 비금융·보험회사: 22 (주)승광, (주)포스텍, (주)포스에이씨종합감리, (주)포스코, (주)포스코건설, (주)포스코경영연구소, (주)포스콘, (주)포스틸, 포스코특수강(주), 포스테이타(주), 포철기연(주), 포철산기(주), 포항강관(주), 포스코터미널(주), 메타폴리스(주), (주)포스메이트, (주)삼정피앤에이, 포스코파워(주), (주)에스엔엔씨, (주)피에이치피, 수원그린환경(주), (주)포스브로</p> <p>□ 금융·보험회사: 1 포스텍기술투자(주)</p>
10	케이티	<p>□ 비금융·보험회사: 19 (주)케이티, (주)케이티서브마린, (주)케이티네트웍스, (주)케이티하이텔, (주)케이티과워텔, (주)케이티프리텔, 케이티링크스(주), 케이티커머스(주), (주)케이티에프테크놀로지스, (주)케이티에프엠하우스, (주)케이티렌탈, (주)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 텔레캡서비스(주), (주)케이티에프엠앤에스, (주)올리브나인, (주)올리브나인엔터테인먼트, (주)올리브나인크리에이티브, (주)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 제일에프디에스(주)</p> <p>□ 금융·보험회사: 1 (주)케이티캐피탈</p>
11	한국토지공사	<p>□ 비금융·보험회사: 1 한국토지공사</p> <p>□ 금융·보험회사: 1 (주)한국토지신탁</p>
12	지에스	<p>□ 비금융·보험회사: 49 (주)위너셋, (주)코스모레포츠, 정산이앤티(주), (주)랜드마크아시아, (주)마루망코리아, (주)보현개발, (주)삼양인터내셔널,</p>

순위	기업집단명	소 속 회사
		지에스퓨얼셀(주), (주)스마트로, (주)승산, (주)승산레저, (주)에스엠, (주)지에스리테일, (주)지에스홈쇼핑, (주)지에스텔레서비스, (주)옥산유통, (주)이지빌, (주)지에스스포츠, (주)지에스왓슨스, (주)지에스홀딩스, (주)캠택인터내셔널, (주)코스모앤컴퍼니, (주)코스모양행, (주)코스모에스엔에프, (주)지에스울산방송, (주)해양도시가스, 삼양통상(주), 서라벌도시가스(주), 센트럴모터스(주), 지에스건설(주), 지에스네오텍(주), 지에스칼텍스(주), 지에스파워(주), 자이서비스(주), 코스모산업(주), 코스모정밀화학(주), 코스모화학(주), 한무개발(주), 에스테크산(주), (주)넥스테이션, 의정부경전철(주), (주)에스티에스로지스틱스, 지에스이피에스(주), (주)지에스강남방송, (주)아이티맥스에스와이아이, 지엘에스서비스(주), (주)에이엠씨오, (주)후레쉬서브, 지씨에스플러스(주)
13	금호아시아나	<input type="checkbox"/> 비금융·보험회사: 35 금호렌터카(주), 금호미쓰이화학(주), 금호산업(주), 금호석유화학(주), 금호피앤비화학(주), 금호폴리캠(주), 아시아나공항개발(주), 아시아나아이디티(주), 아시아나항공(주), 아시아나레저(주), 금호타이어(주), 아시아나에바카스(주), 한국복합물류(주), 호남복합물류(주), 인천공항에너지(주), 금호피에프브이원(주), 금호피에프브이원자산관리(유), 중부복합물류(주), 금호개발상사(주), 충주보라매(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금호터미널(주), 금호리조트(주), 아스공항(주), (주)대우건설, (주)맑은물지킴이, 푸르지오서비스(주), 지케이해상도로(주), 태천개발(주), 한국도로관리(주), (주)지오시티에스, (주)대우에스티, 부곡환경(주), 우리자산관리(주), 일산대교(주) <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회사: 3 금호생명보험(주), 금호종합금융(주), 금호오토리스(주)
14	한진	<input type="checkbox"/> 비금융·보험회사: 25 (주)대한항공, (주)사이버로지텍, (주)칼호텔네트워크, (주)한국글로벌로지스틱스, (주)한진, (주)한진관광, (주)한진해운, (주)항공종합서비스, 거양해운(주), 부산3부두운영(주), 인천항3부두운영(주), 정석기업(주), 토파스여행정보(주), 포항항7부두운영(주), 한국공항(주), 한진정보통신(주), (주)사이버스카이, (주)제동레저,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부산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주), 광양인터내셔널컨테이너터미널(주), (주)한진에스엠, (주)한진퍼시픽, 유니컨버스(주), 한진에너지(주)
15	현대중공업	<input type="checkbox"/> 비금융·보험회사: 4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주), 현대삼호중공업(주), (주)미포엔지니어링 <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회사: 3

순위	기업집단명	소 속 회 사
		현대기술투자(주), 현대기업금융, 현대선물(주)
16	한화	<input type="checkbox"/> 비금융·보험회사: 27 (주)한화타임월드, (주)한컴, (주)한화, (주)한화이글스, (주)한화갤러리아, 한화개발(주), 한화관광(주), 한화리조트(주), 한화석유화학(주), 한화에스앤씨(주), 한화역사(주), 한화종합화학(주), 한화폴리드리머(주), 환경시설운영(주), (주)한화건설, 한화테크엠(주), 군포에코텍(주), (주)한화육삼시티, (주)대덕테크노밸리, 양주엔바이로(주), 한화청량리역사(주), 드림파마(주), 검단에코텍(주), 엔에이치엘개발(주), (주)아산테크노밸리, 한국메디텍제약(주), (주)서산테크노밸리 <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회사: 7 한화기술금융, 한화증권(주), 한화투자신탁운용(주), 대한생명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대생보험심사(주), 대한티엠에스(주)
17	두산	<input type="checkbox"/> 비금융·보험회사: 17 (주)두산, (주)두산베어스, (주)오리콤, 두산중공업(주), 삼화왕관(주), 새채개발(주), 두산엔진(주), 두산메카텍(주), 두산건설(주), 두산모터스(주), 에스알에스코리아(주), 두산인프라코어(주), 네오펀스(주), 세계물류(주), 동현엔지니어링(주), 두산큐백스(주), (주)렉스콘 <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회사: 3 (주)네오플릭스, (주)엔세이퍼, (주)두산캐피탈
18	한국철도공사	<input type="checkbox"/> 비금융·보험회사: 15 (주)코레일애드컴, (주)코레일개발, 코레일유통(주),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 신촌역사(주), 코레일로지스(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산업(주), 코레일전기(주), 일양식품(주), 브이캐시(주), 케이티엑스관광레저(주), (주)코레일엔지니어링, 코레일서비스넷(주), 한국철도통합지원센터(주) <input type="checkbox"/> 금융·보험회사: 1 (주)케이아이비보험중개
19	하이닉스	<input type="checkbox"/> 비금융·보험회사: 5 (주)아스텍, (주)큐알티반도체, (주)하이닉스반도체, (주)현대디스플레이트크놀로지, (주)현대유니콘스
20	한국가스공사	<input type="checkbox"/> 비금융·보험회사: 3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경기씨이에스(주)
21	신세계	<input type="checkbox"/> 비금융·보험회사: 15 (주)광주신세계, (주)신세계, (주)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주)신세계아이앤씨, (주)신세계인터내셔널, (주)신세계푸드,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조선호텔, (주)그린시티, 신세계건설(주), 신세계의정부역사(주), (주)훼미리푸드, (주)조선호텔베이커리, (주)신세계첼시, (주)신세계마트

순위	기업집단명	소 속 회사
22	엘에스	<p>□ 비금융·보험회사: 20 (주)네오텍, (주)지씨아이, (주)파운텍, (주)에스코, 알루텍(주), 엘에스니꼬동제련(주), 엘에스산전(주), 엘에스전선(주), (주)이원, 가온전선(주), (주)에스코서비스, (주)코스페이스, (주)카보닉스, (주)이엔알, (주)대한가스기기, 제이에스전선(주), 캐스코(주),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주), (주)국제상사, (주)이원컨테이너터미널</p> <p>□ 금융·보험회사: 1 델타투자자문(주)</p>
23	현대	<p>□ 비금융·보험회사: 8 (주)현대경제연구원, 현대상선(주), 현대아산(주), 현대엘리베이터(주), 현대택배(주), 동해해운(주), 해양선박(주), 현대유엔아이(주)</p> <p>□ 금융·보험회사: 1 현대증권(주)</p>
24	동부	<p>□ 비금융·보험회사: 14 (주)동부, 동부건설(주),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동부엔지니어링(주), 동부정밀화학(주), 동부씨엔아이(주), 동부제강(주), (주)동부하이텍, 부산항중앙부두운영(주), (주)동부월드, 공주환경(주), 동부인천항만(주), 동부과인셀(주), (주)토마토엘에스아이</p> <p>□ 금융·보험회사: 7 (주)동부상호저축은행, 동부생명보험(주), 동부증권(주), 동부캐피탈(주), 동부자산운용(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p>
25	씨제이	<p>□ 비금융·보험회사: 63 씨제이미디어(주), 씨제이홈쇼핑(주), (주)씨제이케이블넷, (주)조이렌트카, 씨제이씨지브이(주), (주)씨제이텔레닉스, 씨제이개발(주), 씨제이시스템즈(주), 씨제이지엘에스(주), 씨제이푸드시스템(주), 사가와익스프레스코리아(주), 씨제이(주), 씨제이푸드빌(주), 한일식자재마트(주), 씨제이케이블넷가야방송(주), 씨제이케이블넷중부산방송(주), 씨제이엠디원(주), 씨제이올리브영(주), 삼양유지(주), 씨제이뮤직(주), 씨제이케이블넷해운대기장방송, 씨제이조이큐브(주), 씨제이파워캐스트(주), 씨제이티브이엔(주), 씨제이엔지씨코리아(주), (주)신동방씨피, 씨지브이시네마(주), 씨제이엔키노(주), 씨제이인터넷(주), 아트서비스(주), (주)프리머스시네마, 슈퍼피드(주), 돈돈팜(주), 씨제이아이지(주), (주)재산커뮤니케이션즈, (주)애니파크, 단지넷(주), (주)게임알로, (주)월드이스포츠게임즈, (주)챔프비전, (주)씨제이스포츠, 씨제이엔시티(주), (주)엠플온라인, (주)삼호에프앤지, (주)좋은콘서트,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 드림씨티방송</p>

순위	기업집단명	소 속 회사
		(주), 드림네트웍스(주), (주)트라움하우징, (주)썬티브이, 어코드로 지스틱스(주), 씨앤아이레저산업(주), 씨제이케이블넷영남방송(주), (주)에치티에치, 엠넷미디어(주), (주)씨제이무터, (주)브로드밴드솔루션즈, (주)하선정종합식품, (주)한국케이블티브이충남방송, 엠넷과함께(주), 케이엠티브이(주), 클럽서비스(주), 씨제이스토리허브문화산업전문(유) □ 금융·보험회사: 3 씨제이창업투자(주), 씨제이자산운용(주), 씨제이투자증권(주)
26	대림	□ 비금융·보험회사: 14 대림에이치엔엘(주), (주)대림코퍼레이션, (주)삼호, 대림아이앤에스(주), 대림자동차공업(주), 고려개발(주), 대림산업(주), 대림콩크리트공업(주), 만월산터널(주), 오라관광(주), 에코솔이홀(주) 영천상주고속도로(주),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 (주)웹텍코프
27	지엠대우	□ 비금융·보험회사: 3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주), 지엠오토월드코리아(주), 지엠코리아(주)
28	대우조선해양	□ 비금융·보험회사: 6 (주)디섹, 대우조선해양(주), (주)웰리브, 디에스엠이 유텍(주),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주)이창하흙
29	현대건설	□ 비금융·보험회사: 10 (주)종합건축사무소현중설계, (주)현대서산농장, 경인운하(주), 부산정관에너지(주), 현건씨엔아이(주), 현대건설(주), 현대스틸산업(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인재교육센터(주), 제이영동고속도로(주)
30	에스티엑스	□ 비금융·보험회사: 13 (주)에스티엑스, (주)포스인터내셔널, (주)포스텍, 에스티엑스건설(주), 에스티엑스에너지(주), 에스티엑스엔진(주), 에스티엑스엔파코(주), 에스티엑스조선(주), 에스티엑스중공업(주), 에스티엑스팬오션(주), 샘소슬(주), 에스티엑스오일앤서비스(주), 에스티엑스탱크터미널(주) □ 금융·보험회사: 1 (주)흥국상호저축은행

* 직전년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이상인 30위까지의 기업

서 약 서

본인은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본인은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소속기관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업 체 명	(공동수행회사):		대표자		
	소재지	(우편번호 : -)			(Tel)	
		주소 :			(Fax)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억원
	사업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F/S 사업 개요	조사대상 (국명,지역)			프로젝트명	(국문)	
	예상발주처 (주소)			예상발주액	천만원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소요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사업책임자	부 서			Tel	
직 위				(HP)		
성 명				Fax		
				E-mail		
<p>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44호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사업관리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p>						
<p>첨부서류 1. 타당성조사사업 제안서 10부(C/D 1장 첨부)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기업의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p>						

타당성조사사업 선정평가표

(프로젝트 명 :)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평점사유
1.프로젝트 실현가능성 (40)	1-1 재원조달 가능성 가. 공신력 있는 자금 기 확보 여부 나. KEXIM, 국제금융기구, 수출신용 기관(ECA)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로 투자자 혹은 대출자 로부터 긍정적 의사를 확보 여부 등	15		
	1-2 발주국 신용도 가. OECD 국가등급 등	5		
	1-3 발주처의 추진능력 가. 정부주도 나. 국영기업 혹은 관민 혼합기업 다. 프로젝트에 특별한 연고권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민간 기업 등	15		
	1-4 기술적 가능성 가. 기술적용 가능 여부 나. 수주추진기업의 기술 확보 여부 등	5		
2.프로젝트 수주가능성 (20)	2-1. 발주처와의 관계 가. 발주처와 프로젝트 추진 경험 유무 나. 발주처가 우리나라와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등	15		
	2-2 발주국과의 관계 가. 정책적 자원부국 나. 국내기업 진출 여부 다. 외교관계 등	5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평점사유
3.프로젝트 수행가능성 (25)	3-1 신청업체의 F/S수행 능력 가. 해외 프로젝트 F/S 수행경험 유무 나. 국내 프로젝트 F/S 수행경험 유무 다. 수행조직 확보하고 수행가능 유무 등	10		
	3-2 신청업체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 가. 유사 해외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나. 유사 국내 프로젝트 추진경험 유무 등	10		
	3-3 F/S 예산편성의 적정성 가. 인건비 적정 여부 나. 경비 적정 여부 다. 외주용역비 적정 여부 등	5		
4. 프로젝트 수행 파급효과(15)	4-1 수출파급효과 가. 국내 생산 기자재, 용역 수출,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업가능성이 여부 나. 후속 연관프로젝트의 가능성 여부 다. 기타 파급효과 여부 등	10		
	4-2 발주국 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개발 효과 여부 나. 환경에 미치는 효과 여부 등	5		
합 계				

평가일자 : 200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사업 협약서(표준양식)

- 사업명 :
-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일)
- 소요예산 : 총 원
 - 정부지원금 :
 - 민간부담금 :
- 협약당사자
 - (갑)전담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을)참여기업 :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첨부 1의 타당성조사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표와 동일함

제2조(사업수행) (갑)과 (을)은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을)은 첨부 사업계획서에 따라 타당성조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지침개정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된 지침에 따른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갑)은 동 지침 제18조(정부지원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정부지원금 중단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을)은 사업비(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를 관련법령 및 동 지침 제19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한다.

④(갑)은 동 지침 제23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의 규정에 따른 정산 결과 정부지원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지원금을 (을)에게 차감지급 또는 환수 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업 부담금의 관리) (을)은 (갑)으로부터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기 전에 민간 부담금을 정부지원금 입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부담금의 경우에도 동 지침 제19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의 보고 등) ①(을)은 동 지침 제20조(중간진행상황 보고 및 점검) 및 제21조(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의 규정에 따라 중간진행상황 및 최종보고서를 보고하

서 약 서

본인은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사업목적 외에 사업비를 임의 집행하거나, 사업비를 유용 또는 사업비 사용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중대한 협약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기일내에 미제출한 경우.
3. 전담기관이 요청한 보완 또는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
4. 전담기관이 참여업체의 불성실로 타당성조사를 더 이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변경승인 요청서

사업명			
참여기업		사업책임자	
조사기간			
사업비	정부지원금	참여기업 부담금	합 계
	원	원	원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전달기관 검토와 승인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출		
검토 의견	※ 전달기관이 기재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

중간 진행 상황보고

년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타당성조사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간 진행 상황보고합니다.

프로젝트 명 :

F/S 총 비용 :

정부지원금액 :

F/S 조사기간 :

첨 부 : 중간진행상황보고서 2부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사업 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

※ 중간진행상황보고는 조사계획 대비 추진상황을 5쪽 내외로 작성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서

년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타당성조사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동 관리지침 제21조(조사결과의 확정 및 활용)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산업계, 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으로의 배포에 동의합니다.]

프로젝트 명 :

F/S 총 비용 :

정부지원금액 :

F/S 조사기간 :

첨 부 : 최종보고서 및 국문요약서 각 7부 및 C/D 1장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사업 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

* 비공개인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고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사업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프로젝트명						
참여기업						
사업책임자						
조사기간						
총사업비(천원)	정 부 지원금		민 간 부담금		계	
집행금액(천원)	현 금				계	
<p>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및 사용명세서는 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p> <p>첨 부 : 1. 사업비 사용명세서(별지 제11호 서식) 2부. 2.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3. 사업비 통장 사본 2부. 4. 협약서(사업계획서 포함) 사본 1부. 5. 외주용역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비 변경승인 문서 사본 1부.</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 . .</p> <p>참여기업: (기관명) (사업책임자) (인) (대표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한국플랜트산업협회장 귀하</p>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잔액	증감사유
	현금	현금	현금	
1. 인건비				
- 인건비				
2. 경비				
- 국외경비				
- 국내경비				
- 외주용역비				
합 계				이자발생 금액: 천원

※ 당초 계획 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으로 표기 또는 별도로 첨부하여 표기

2. 비목별 사용명세서(엑셀파일로 작성하여 별도 디스켓으로도 제출)

가. 인건비

[인건비]

집행일	성명	주 민 등록번호	해당업무	노임단가	투입월수	금 액(천원)	비고 (증빙번호)
소 계							

나. 경비

[국외경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천원)			

[국내경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천원)			

[외주용역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천원)			

5.3 해외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및 수주교섭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2006. 1.	제정
2007. 1.	1차개정
2008. 1.	2차개정
2009. 3.	3차개정
2010. 2.	4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수주교섭활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이라 함은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기본계획·설계·구매조달·시행·조사감리·시운전·지도·유지보수 등의 활동과 그 활동에 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타당성조사 지원”이라 함은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중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사업 타당성조사, 컨설팅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 조사활동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해외 수주교섭”이라 함은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하여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현지 방문을 통한 교섭 및 조사·현지 전문가·활용·관계자 초청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경험의 축적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구성된 컨소시엄체를 말한다.
5. “중견기업”이라 함은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1,0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400억원이상~1조원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전담기관”이라 함은 해외 지원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말한다.
8. “신청업체”라 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자로 당해년도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말한다.

9. “지원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법 제3조의 5에 근거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사업으로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10. “지원업체”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당해년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2.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상기 위원회에 의한 지원업체의 평가,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4.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
5. 지원사업 수행의 감독 및 사업비 정산·환수
6.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7.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8. 사업지원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② 전담기관의 장은 본 지침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대상)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엔지니어링 해외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2. 해외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3. 기타 지원사업
 - 가. 발주처(프로젝트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방한 연수 지원
 - 나. 기타 업계 공동의 이익이 되는 시장개척 차원의 프로젝트
 - 다.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프로젝트
 - 라.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프로젝트
4.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② 전담기관의 장은 엔지니어링 해외 수주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의 시장조사, 수주교섭 및 관련 지원, 홍보 등의 사업 수행 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은 1항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업체는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등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사업 발굴, 해외 수주 교섭 및 조사활동 등
2. 미진출 국가의 프로젝트
3. 지식경제부장관이 전략적으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
4.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프로젝트
5. 기타 전담기관에서 해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젝트

제2장 평가위원회

제6조(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위하여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은 학계, 업계, 금융계, 유관 기관, 단체의 엔지니어링 전문가 중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및 전담기관 상근책임자, 지식경제부 담당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전담기관의 해당 부서 관리책임자로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필요시 비용평가소위원회를 두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지원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평가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선정
2. 지원금액의 결정
3. 사업결과의 평가

4.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평가위원은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신청업체 또는 신청 프로젝트에 관련된 인사일 경우 해당 지원신청서에 대한 심의 및 평가 시 배제시킬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출석 등 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제8조(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일간지 등 대중매체 또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 사업의 지원규모 및 대상
2. 신청기간, 신청요령, 접수방법 등
3.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발주 수요,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2~3회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신청서 접수) ① 신청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서 1부.(전자파일을 첨부한다.)
 - 가. 지원신청 요약
 - 나. 지원요청 내용 및 추진경위
 - 다. 신청업체의 사업수행능력
 - 라.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 사업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마. 수주가능성 및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자체 평가
 - 바. 발주처, 외주용역기관 등 지원신청사업과 관련된 기관에 관한 소개자료
 - 사. 기타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제10조(신청서 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되 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업체에 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업체는 7일 이내에 보완자료 및 첨부서류 등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1]의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근거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 평가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신청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집계한 종합평점의 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⑥ 2개 기업 이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지원사업 선정 및 정부지원금 비율 산정 시 우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선정 후 협약체결을 포기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하는 프로젝트가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추가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순위의 업체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⑧ 평가위원회는 수주 및 해외진출 확대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회원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기여 등 협력의 정도에 따라 [별표1]의 사업평가기준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액 결정) ① 타당성조사 등의 지원의 경우 건당 한도액은 5천만원 내외로

하며, 수주교섭 및 조사 지원의 경우에는 **건당 2천만원** 내외로 한다.

② 모든 비용은 발생비용의 70%이내로 지원하되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평가위원회는 신청서의 사업예산이 다음 각 호의 비목 및 [별표3]의 「인정 기준 및 한도액」에 의거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국외여비
2. 현지경비
3. 초청인사경비
4. 기타비용

④ 국비지원 사업기간은 10월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⑤ 3항의 비용은 사업비 중 직접경비만을 의미하며, 기술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신청업체에게 평가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협약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참여기업 대표와 협약을 체결한다.

③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 및 참여기업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시 제출서류 [별표 2]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후에 개최되는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을 소급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의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지원업체는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

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 책임자의 변경
2. 사업 기간의 변경
3. 사업 금액, 비목의 변경
4. 사업 내용의 변경, 중지 등 사업수행 상 중요한 사항

② 협약의 변경승인 요청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기업의 변경승인 요청 공문 및 변경승인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2. 컨소시엄, 협력업체 등의 변경요청시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수행 동의서
3. 사업 금액, 비목 변경요청시 변경사용내역
4. 사업 기간 변경요청시 변경사유서
5. 기타 중요한 사항 발생시 해당내용 사유서

제15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2.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지원 프로젝트의 계속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① 항에 의하여 협약의 중지 및 해약발생시 기 지급된 지원금은 정산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업체의 의무) 지원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 이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 부담
2. 사업책임자의 지정, 사업 수행의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
3. 관계법령 및 기준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

제4장 사업 관리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① 지원업체는 협약체결 후 관련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금액을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원업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지원업체는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는 정부지원금 및 지원업체의 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사업책임자는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원업체는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목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비목을 변경할 수 있다.
4. 지원업체는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간 요약보고 및 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중간보고서를 요구할 시 지원업체의 사업책임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중간보고서를 당초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은 지정된 별도 양식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 결과보고서(전자파일 포함)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개요
2. 추진 경과
3. 추진 결과
4. 전망 및 향후 계획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위원회는 사업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적정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업체로 하여금 사업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또는 추가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원업체는 전담기관의 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하여 지원업체가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 결과의 확정 및 활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의하여 사업결과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사업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요청할 때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업체는 [별표4]에 의거하여 사용실적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정산자료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내역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토한 후 부적합한 집행 또는 증빙서류의 미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외국 업체에 지급한 사업비의 정산은 외국기업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지원업체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액을 확정하고,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제재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업체가 동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 행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를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재조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는 정부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환수 결정 후 지원업체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지원업체는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주활동이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 년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원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지원업체가 지원금을 반납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신청 및 평가 시 불이익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6조(세부규정 등 제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부요령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운영예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2%이내의 금액을 해외수주역량강화 지원사업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기타) 이 지침 및 하위 요령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발생하는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2006. 4.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원사업 평가표

항 목		배점	평가 중점 고려 사항
공 통 평 가 항 목 (80)	1.수주가능성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주활동 추진 경과 및 발주처와의 관계, 비중, 교섭노력 등. - 각종 업무협약, 의향서, 서신, 계약 등의 문서 유무 · 협력업체 및 예상 경쟁관계, 수주를 위한 업체의 강점 · 해당 프로젝트와 연계한 후속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2.시장개척 효과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또는 미개척 국가 프로젝트일 경우 가점 · 집중지원 대상 지역 또는 과당경쟁 지역 여부 등
	3.사업계획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 기본설계, 마스터플랜에의 참여 또는 수행 여부 · 항목별 구분의 명확성 및 타당성, 사업내역의 합리성, 사업비 집행계획 및 금액 등 예산의 적정성
	4.중복지원 및 실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년도 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 과년도 지원업체인 경우, 해당 프로젝트 추진실적
F/S 지원 (20)	5.프로젝트 전문성 및 파급효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분야 여부, 신기술 도입 여부 및 내용 · 타당성조사 후속 절차와의 연계성, 국내 업계 기대효과 등. · 현재 또는 향후 EDCF 및 ODA 등 개발자금과의 연관성
수주 교섭 지원 (20)	5.향후 발전 가능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개발, 수주를 통한 국내·외 엔지니어링 산업에 파급 효과 및 확대 여부 · 해외 프로젝트 수주경험의 국내·외 연계 및 사업에 활용 방안

[별표 2]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사본	비고
1	정부지원금 입금 계좌	1	사본	
2	협약서	1	원본	별지 3호 서식 참조
3	사업계획요약서	1	원본	별지 4호 서식 참조
4	서약서	1	원본	별지 2호 서식 참조
5	법인등기부등본	1	원본	
6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사본	
7	인감증명서	1	원본	
8	사용인감계	1	원본	
9	지원금 지급청구서	1	원본	자유양식. 지원금 요청 공문서

[별표 3]

각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

항	목	내 용	한도액
국외여비	국제항공료	하단 표의 항목 중 국외여비 규정 적용	-
	체재비	하단 표의 항목 중 국외여비 규정 적용 (단, 1회 출장시 20일 이내)	
현지경비	활동경비	기술자문, 임대료, 자료수집비, 현지조사비 등 현지 활동비	-
	현지전문가 사용료	통역, 안내 등 현지 전문가 사용료 및 컨설팅 비용	
초청인사 경비	항공료	발주처 국장급 및 관련업체 대표(이사)급 이상은 비즈니스, 그 이하의 경우는 이코노미 수준 적용	협약금액의 30% 이내
	체재비	하단 표의 항목 중 초청인사 경비 적용 (2인이내, 각 7일이내)	
기타비용	기타비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경비 (보험료, 자료복사, 인쇄, 번역비, 회계감사비용 등)	협약금액의 10% 이내

※ 상기 지원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 국외여비 및 초청인사 경비 :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

(단위: 달러)

구분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료
초청인사 경비	35	166	107	준1등석 실비
국외여비	35	79	49	

※ 기타 세부사항

- 국제항공료 항목에서 경유지는 사업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함.
- 최종정산서는 반드시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야 함.
- 항목별 한도액은 해당 업체에서 전담기관에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환율은 해당 비용 집행 일자 ‘현찰 살 때’의 환율을 기준으로 함.

[별표 4]

사업비목 구분 및 증빙서류

항	목	증빙서류	비고
국외여비	항공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항공 발행확인서 또는 Boarding Pass, · 여권 사본 및 입출국 사증 사본 · 출장명령서 비용견적서(필요시) · 비용집행영수증(입금증 또는 카드전표) 등 	
	체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명령서 · 여권 사본 및 입출국 사증 사본 등 	
현지경비	현지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집행영수증 등 	
	현지전문가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집행영수증 · 전문가 ID카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전문가 사용 계약서 또는 협약서(필요시) 	
초청인사 경비	항공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항공 발행확인서 또는 Boarding Pass · 초청인사 여권 사본, 비용견적서(필요시) · 비용집행 영수증(입금증 또는 카드전표) 등 ※ 단, 비지니스급으로 초청 시 초청인사의 재직증명서 첨부 	
	체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품의서 사본 등 ※ 단, 비지니스급으로 초청 시 초청인사의 재직증명서 첨부 	
기타비용	기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 집행 영수증 등 · 도서구입 - 비용영수증, 내역, 도서표지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수주교섭활동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주 소 :			(Tel)		
	종업원수	명	자본금	직원	매출액(전년도)	국내	직원
						해외	만불
사 업 자 등록번호				설립일자			
				활동주체신고번호			
사업개요	대상국가				사업명		
	예상발주처				예상발주액	만불	
					예상수주액	만불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소요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사업 책임자	부 서				전 화	
직 위					휴대폰		
성 명					팩 스		
실무자	부 서				전 화		
	직 위				휴대폰		
	성 명				팩 스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수주교섭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제안서 1부.(전자파일 첨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각 1부.

제6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갑)은 동 지침 제17조(지원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동 지침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갑)과 (을)은 본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동 지침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8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사업계획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끝.

200 년 월 일

(갑)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인)

(을) : 지원업체 대표(이사) (인)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타당성조사 및 수주교섭활동 지원사업 사업계획요약서

구 분	사업계획 요약			
신청업체 개요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자본금	
	연매출액 (천원)		현업실적 (천원)	
프로젝트 개요	대상국		사업명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예상발주처		예상발주액	
	총소요금액		협약금액	
	신청구분			
	자금조달계획			
	사업내용			
	추진경위 (현재까지)			
	향후계획			
지원요청 내용				
신청업체 사업수행능력				
수주가능성 및 후속사업 연계가능성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변경승인 요청서

사업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사업비	정부지원금	참여기업 부담금	합 계
	원	원	원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 참여기업이 기재하여 제출, 상세하게 작성		
검토 의견	※ 참여기업 요청서 제출 시 공란처리, 제출 후 전담기관이 기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평 가 위 원 서 약 서

본인은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및 수주교섭활동 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이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200 년 월 일

서약인 (인 또는 서명)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5.4 중소전기전문시공업 해외수주활동 지원사업 관리지침 - 한국전기공사협회

2009. 8. 18 제 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전기전문시공업의 해외수주활동 지원사업(이하 “해외수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중소전기전문시공업의 해외수주지원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2. “신청기업”이라 함은 해외건설촉진법상의 해외건설업 신고를 필한 전기공사업 전문업체로 당해연도의 해외수주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라 함은 해외건설촉진법상의 해외공사로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4. “지원기업”이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당해연도 해외수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6. “전기공사업 전문업체”라 함은 신청일 현재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건설업이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

제3조(해외수주지원사업의 범위) 해외수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신규시장의 개척 혹은 현지발주처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 단, 국내 건설업체의 하도급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다국적기업, 해외개발업자, 해외플랜트진출업체 등이 발주하는 프로젝트

제4조(지원사업의 대상 및 제한) 지원사업의 대상 및 제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현지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지원.
2. 발주처(프로젝트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방한 연수 지원
3. 지원사업의 제한
 - 가. 신청한 내용과 동일지역, 동일사업으로 이미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은 불허한다.
 - 나. 1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누적 지원가능 회수는 3회를 상한으로 한다.
 - 다. 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당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전담기관) ①전담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
 4. 지원사업 수행의 감독 및 사업비 정산환수
 5.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6. 차기년도 해외수주활동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7. 사업지원 신청서 접수 및 처리
 8. 2개 이상의 기업이 대리 시행을 요구하는 사업의 수행
- ②전담기관의 장은 본 지침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예산의 5% 이내에서 사업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④전담기관은 지원사업예산의 10%이내에서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전문가 지원 등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회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⑤전담기관의 장이 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 전용계획에 대하여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평가위원회

제6조(구성) ①전담기관의 장은 해외수주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위하여 중소기업전문시공업 해외수주활동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민간위원 중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안이 발생할 때 호선하여 매회 임명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업계, 금융계, 단체의 해외건설 관련 전문가중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전담기관의 해당 부서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7조(운영) ①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지원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따른 사업집행 우선순위 및 지원사업의 대상의 조정
2. 지원신청서의 평가 및 지원사업의 선정
3. 지원금액의 결정
4. 사업결과의 평가
5.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위원은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지원대상기업 또는 지원대상사업에 관련된 인사일 경우 해당 지원신청서에 대한 심의 및 평가를 배제시킬 수 있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출석 등 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제8조(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전담기관의 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전력분야 전문지등 대중매체 및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외수주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사업의 총 지원예산
2. 해외수주지원사업의 범위 및 추진일정
3.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제9조(신청서 접수) ①신청기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서 10부(전자파일을 첨부한다.)
 - 가. 지원신청 요약서
 - 나. 지원신청 내용 및 추진경위
 - 다. 신청기업의 사업수행능력
 - 라.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 사업기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마. 수주가능성 및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자체 평가
 - 바. 발주처, 외주용역기관 등 지원신청사업과 관련된 기관에 관한 소개자료
 - 사. 기타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2. 신청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청기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당해년도 실적신고서 제출업체는 제외)
4. 신청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②전담기관의 장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실적이 저조한 경우 추가 접수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 접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접수에 관한 내용은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서 평가) ①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되 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은 15일 이내에 보완자료 및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1]의 사업평가기준에 근거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서의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⑤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집계한 종합평점의 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 ⑥공기업과 대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선정시 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⑦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선정 후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지원사업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사업 선정절차에 의한다.
- ⑧신청기업과 발주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서한, 양해각서, 의향서 등을 제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⑨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해외진출 기여도가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요건에 대하여 종합평점에서 일정범위내의 가점과 감점과 관련된 기준을 정하여 이를 평가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기준은 평점의 10%를 넘을 수 없다.

제11조(지원금액 결정) ①지원사업의 건당 한도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총 사업소요비용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은 70% 이내로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소요예산이 [별표 3] 및 다음 각호의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업

가. 현지수주교섭 및 조사활동사업 지원시 [별표 2]의 직접경비 전항목만 인정된다.

나. 발주처 인사 및 엔지니어의 방한 시찰 또는 방한 연수사업 지원시 [별표 2]의 직접경비 전항목만 인정된다.

2. 타당성 조사사업

가. 신청기업이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타당성조사활동을 포함한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타당성 조사사업지원을 수행하는 타 기관을 통하여 주활동에 대한 지원신청을 하도록 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확정 및 통보)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신청기업에게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체결) ①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표 3]의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협약서류를 작성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조정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지원기업은 협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 변경
2. 사업기간 변경
3. 사업금액 변경
4.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

제15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관련서류의 미제출
2. 사업비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3. 기타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지원기업의 의무)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원금 이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및 현물 부담
2. 사업책임자의 지정, 사업 수행의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
3. 관계법령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

제17조(지원금의 지급) ①전담기관은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의 현금부담금이 입금된 통장에 지원금의 50%를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원기업에 지급하며 나머지는 사업종료 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기준하여 미달 집행하는 경우 지원비율을 실제 집행금액에 협약시 정한 비율로 하며 초과 집행금액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업관리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는 기금지원금 및 지원기업의 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사업책임자는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원기업은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목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비목을 변경할 수 있다.
4. 지원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조사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간 요약보고 및 점검) ① 지원기업의 대표자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대비 추진상황이 포함된 중간요약보고서를 사업계약시 명기된 중간보고일자의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출된 중간요약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별로 계속수행의 필요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계속수행이 불요하다고 결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해약 조치하고 지원금을 회수하여 타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되 예산규모 및 업무수행의 정도를 감안하여 차년도 사업으로 이월 할 수도 있다.

제20조(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 개요
2. 추진 경과
3. 추진 결과
4. 전망 및 향후 계획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위원회는 사업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적정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업으로 하여금 사업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또는 추가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의 조치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하여 지원기업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결과의 확정 및 활용)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의하여 사업결과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최종 사업결과보고서중 일부를 업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업의 수주활동과정에서 보고서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주활동 종료시까지 공개를 유보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지원기업은 사용실적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 내역을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토한 후 부적합한 집행 또는 증빙서류의 미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외국기업에 지급한 사업비의 정산은 외국기업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같음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이의 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액을 확정하고, 차감지급 또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정산의 효율적인 실시와 정산결과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문회계법인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정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기업이 부담하고, 이를 지원사업 사업비로 인정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회계법인에 정산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정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제재 및 환수)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동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를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제조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기금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는 기금지원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환수 결정후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기금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지원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지원기업이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⑤지원기업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협약지원금액의 70%이상을 집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해외수주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미집행의 귀책사유가 당해기업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수요조사의 실시) 전담기관의 장은 차기년도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기금 지원사업의 연차보고일 3개월 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지원사업의 운영방안에 반영한다.

제25조(사후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수주활동이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기금사업 수행결과 보고시 보고한다.

②지원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2009. 8.)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중소전기전문시공업 해외수주활동 지원사업 평가기준

평가일 : 년 월 일

평가위원 :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사유
		A	B	C	D	
1.프로젝트의 평가 (25)	1-1 발주자 및 신청기업의 신뢰도 (10)	10	9	8	7	
	1-2 공사내용의 발전성 (10)					
	1-3 신규시장 개척기여도(5)	5	4	3	2	
2.수주 가능성 (40)	2-1 수주활동 내용평가 (10)					
	2-2 발주처 및 현지기관과의 관계(10)					
	2-3 예상 경쟁관계(10)					
	2-4 후속사업과의 연계 가능성(10)					
3.해외시장 개척 기여도 (25)	3-1 신청기업의 해외공사 경쟁력 (15)	15	13	11	9	
	3-2 신청사업의 시장개척 기대효과(10)					
4.사업내역 (10)	4-1 사업계획의 합리성(5)					
	4-2 예산의 적정성(5)					
평점 합계						

[별표 2]

사업비목 구분 및 증빙서류

관	항	목	증빙서류	비고
직접 경비	국외 여비	국제항공료	· 항공료 지불 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항공료는 실비정산 - 체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수하되, 초과 숙박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 - 자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동행시 여비 인정
		체재비	· 여권사본, 출입국 증명 또는 현지 체류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경비	현지항공료	· 항공료 영수증	현지조사를 위해 내국의 지역 간 이동에 소요된 항공료
		현지교통비	· 현지 교통비 영수증	지역간 이동에 소요된 교통비 차량임대기간과 중복 불가
		현지 차량 임차료	· 임차 영수증	임대회사, 차종, 임차기간 등 제출
		현지 회의 제경비	· 경비지출 영수증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결과 등 별도 제출
		자료수집비	· 자료구입 영수증	자료명, 가격, 구입일 등 제출
		자문료	· 관련 영수증	금융, 세제, 법률, 회계, 기술 자문 및 통·번역에 소요된 비용
		보고서 인쇄비	· 관련 영수증	발주처 제출용 보고서 인쇄비
		통신비	· 관련 영수증	현지 로밍 등 증빙 영수증
		선물비	· 관련 영수증	국가 및 인사에 적정한 금액
사업비 정산 수수료	· 회계법인과의 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지정 전문회계법인에 지출한 수수료 영수증		

[별표 3]

협약체결서류 목록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간인	비 고
1	기금지원금 입금계좌	1	사본	-	- 예금주, 계좌번호
2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1	원본	-	-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3	지원 대상기업 담당자의 신분증	1	사본	-	- 업무 연락시 필요 - 해외사업 책임자
4	협약서	2	원본	필요	- 전담기간/지원기업 간 체결
5	사업비 세부내역 및 집행계획	2	원본		- 사업계획서에 첨부
6	사업제안서	2	원본	-	- 수정사업제안서 참고, 제작성 - 신청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첨부서류는 재제출하지 않음
7	지원기업과 외부기업간의 계약서	2	사본 가능	필요	- 지원기업이 외주용역으로 수주활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출 - 지원기업대표와 외주용역기업 대표간 체결 - 지원기업 및 외주용역기업 원본 보관

[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중소기업전문시공업 해외수주활동 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본인은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귀하

1. 사업제안서 요약 (* 파란글씨는 예시입니다.)

업체명: ex) 00전력

업체 개요	기업구분	중소기업		해외건설업 신고업종	전기공사업,소방공사업 등
	매출액 (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프로 젝트 개요	국 가	방글라데시		사 업 명	도로 조명시설 공사
	발 주 처			사업규모	75만불
	재 원	발주처채원		사업기간	2009.1. ~ 2010.12.
	재 원 조달계획				
	용역(공사) 내 용				
신청 사업 개요	사업대상	현지교섭, 초청		신청사업 기 간	2009.1.1 ~ 2010.2.31
	소요금액	50백만원		신청금액	35백만원 (70%)
해외 사업 실적	연도	내용		금액(백만원)	결과
추진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 2월 ○ '08. 11월 ○ '09. 2월 ○ '09. 3월 				

<p>추진 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 3월 1차 현지조사 ○ '09. 4월 ○ '09. 5~10월 ○ '09. 12월
<p>사업 수행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년 설립된 전기공사업체로서 '07년 매출액이 21억원임
<p>수주 및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p>	
<p>제출 증빙 서류 목록</p>	
<p>비고</p>	

2. 소요예산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 분	내 용	총비용	신청금액	비 고
국외여비	국제항공료			
	체재비			
	기타			
	소계			
경비	현지항공료			
	현지교통비			
	현지 차량 임차료			
	현지 회의 경비			
	자료 수집비			
	자문료			
	기타			
	소계			
합 계				

- (주) 1) 지면 부족시 추가 지면 사용 가능 2) US1달러당 1,300원 적용
3) 소요예산 산출기준의 예산지원 비목을 참조하여 작성

의하여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①(갑)과 (을)은 본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동 지침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9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의 해석에 의한다.

②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1. 사업제안서 1부

2. 지원기업과 외주용역기업의 사업계약서(외주용역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년 월 일

(갑) : 전담기관장 (인)

(을) : 지원기업 대표 (인)

사업책임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변경승인 요청서

사업명			
지원기업		사업책임자	
조사기간			
사업비	지원금	지원기업 부담금	합 계
	원	원	원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전담기관 검토와 승인에 필요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출		
검토 의견	※ 전담기관이 기재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귀하

중간 진행 상황보고

년 중소기업전문시공업 해외수주활동 지원사업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해외수주활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중간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프로젝트 명 :

총 비 용 :

지 원 금 액 :

사 업 기 간 :

첨 부 : 중간요약보고서

년 월 일

지원기업명 :

사업 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귀하

※ 중간요약보고는 계획 대비 추진상황을 5쪽 내외로 작성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서

년 중소전기전문시공업 해외수주활동 지원사업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해외수주활동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동 관리지침 제21조(조사결과의 확정 및 활용)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프로젝트 명 :

총 비 용 :

지 원 금 액 :

사 업 기 간 :

첨 부 : 최종보고서

년 월 일

지원기업명 :

사업 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귀하

* 비공개외의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고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중소전기전문시공업 해외수주활동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프로젝트명						
지원기업						
사업책임자						
사업기간						
총사업비(천원)	지원금		지원기업 부담금		계	
집행금액(천원)	현금				계	
<p>중소전기전문시공업 해외수주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및 사용명세서는 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p> <p>첨 부 : 1. 사업비 사용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2.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3. 사업비 통장 사본 1부. 4. 협약서(사업계획서 포함) 사본 1부. 5. 외주용역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비 변경승인 문서 사본 1부.</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20 . . .</p> <p>지원기업 : (기관명) (사업책임자) (인) (대표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한국전기공사협회장 귀하</p>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계 획 금 액	사 용 금 액	잔 액	증 감 사 유
1. 국외경비				
- 국제항공료				
- 체재비				
2. 경비				
- 현지항공료				
- 현지교통비				
- ○○비 등				
합 계				이자발생 금액: 천원

※ 당초 계획 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으로 표기 또는 별도로 첨부하여 표기

2. 비목별 사용명세서

가. 국외경비

[국제항공료]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천원)			

[체재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천원)			

나. 경 비

[현지항공료]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지교통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내역(상세히 표기)	금액(원)	비고 (증빙번호)
소계	천원(현금: 천원)			

※비목별 집행내용 계속 작성

